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무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일시 : 2013년 9월 16일(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김영주 의원 · 민병두 의원 · 문병호 의원 /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I부 : 사전행사

- 인사말
- 내외빈소개

II부 : 토론회

- 사회 : 이 덕 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 발제

1.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병 주 (계승연대 이사, 집행위원장)

2.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 -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국가보훈처 정책용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 영 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3.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 상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종합토론

- 송 병 현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조 성 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 백 승 평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운영위원)
- 김 준 희 (구로동맹파업 민주화운동 해직자)
-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유죄판결자

III부 뒤풀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민주유공자법은 2013년 정무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인사말 : 김영주, 민병두, 문병호 의원 / 신미자, 양승조 이사장 4 p
- 사회 : 이 덕 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 발제
 1.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17 p
이 병 주 (계승연대 이사, 집행위원장)
 2.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 -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회전
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국가보훈처 정책용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33 p
이 영 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3.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49 p
이 상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토론
 -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의 당위와 방향 57 p
송 병 현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전문위원)
 -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공헌과 역사기억 63 p
조 성 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 민주화운동 상이자 69 p
백 승 평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운영위원)
 - 구로동맹파업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고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노동자의 인간선언 투쟁이었다 75 p
김 준 희 (구로동맹파업 민주화운동 해직자)
 - 긴급조치, 민청학련 사건 유죄판결자
- 참고자료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안원문 81 p
 -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회 검토보고서 111 p
 - 부마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회 검토보고서 124 p
 - 계승연대 민주유공자법 관련 성명서 137 p
 - 국회 민주유공자법 관련 입법활동 경과 141 p

모든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발전 과정으로 존중돼야



국회의원 김 영 주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영등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영주입니다.

먼저, 민주화운동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애써오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민주화운동자와 유가족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 토론회를 빛내주신 이덕우 변호사님, 이병주 위원장님, 이영재 교수님, 이상희 변호사님, 송병헌 위원님, 조성혜 센터장님, 백승평 위원님, 김준희님을 비롯하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에 항거한 수많은 시민과 학생의 참여와 희생 덕분입니다. 민주화운동이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등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분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국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

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민주 회복을 위해 싸워온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는 사건이나 시점에 따라 차별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입법의 정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시기와 정도에 따라 줄을 세우는 꼴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주화운동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존중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주화운동을 차별없이 존중하는 방법은 민주유공자에우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유공자에우법은 16대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래,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어 입법이 논의되어왔으나, 정치환경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민주유공자에우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민주유공자분들의 생생한 요구가 정부, 국회에 전달되어 민주유공자에우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문병호, 민병두 의원님과 긴밀히 상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민주유공자에우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 합당한 예우 받아야

국회의원 민 병 두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동대문구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민병두입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근거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토대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쟁취되었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숭고한 교훈입니다.

때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국민과 국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도 아직 입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유공자에우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식과 사회 곳곳에 확고한 가치와 원칙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벌어진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으로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도 끊임없이 가꾸고 튼튼하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성취하는 한편, 민주주

의가 국민 속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는 소중한 작업의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시점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차별하고, 입법과 예우를 경쟁시키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것이고,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기여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6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었던 민주유공자에우법이 왜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논의가 향후 정무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어, 조속한 입법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이덕우 변호사님, 이병주 위원장님, 이영재 교수님, 이상희 변호사님, 송병헌 위원님, 조성혜 센터장님, 백승평 위원님, 김준희님과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민주화운동관련자와 유가족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주의 가치 되새겨야

국회의원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인천부평갑)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9월 27일, 96분 의원님들과 함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대표발의한 문병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민주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국민과 함께 싸워온 민주화운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자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못지않은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이 4.19민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1985년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 4.19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4.19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와 군사독재에 맞서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 5.18민주화운동보상법과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제정되어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본인과 유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예우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2000년 16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틀이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이 2002년 먼저 제정되었고,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의 진전에 따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벌써 14년 동안 시행되었고, 현재 민주화운동자에 대한 심의도 99.8% 진행되어 8천여 건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위원회는 백서발간 등 활동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민주유공자예우법은 16, 17,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런 것은, 국가보훈처가 십 수년째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온 민주유공자예우법(2012.09.27. 발의)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같은 범주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유공자예우법(2013.05.13. 발의)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4.19 이후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시점이나 사건에 따라 일일이 별도 입법을 해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관련자들은 입법의 정당성과 우선순위를 놓고 동지들끼리 서로 경쟁해야하는 참담하고 당혹스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훼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부당하게 직장을 잃고 학교에서 쫓겨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독재세력에 맞서 민주 회복을 위해 싸워온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는 사건이나 시점에 따라 차별될 수도 없고, 차별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존중되고, 계승되어야 하며, 민주유공자들은 공헌만큼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방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민주유공자들의 공헌에 대한 응당한 예우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2013년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예우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사회와 발전, 토론을 맡아주신 이덕우 변호사님, 이병주 위원장님, 이영재 교수님, 이상희 변호사님, 송병헌 위원님, 조성혜 센터장님, 백승평 위원님, 김준희님을 비롯하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민주유공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사장 신 미 자



1919년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 그리고 박정희 유신정권과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온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시킨 민주화투쟁의 공헌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입법활동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목숨을 잃고, 몸을 다치고 질병을 얻고, 감옥에 갇히고, 밀터와 학교에서 쫓겨나는 등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투쟁으로 부모님과 형제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희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오롯이 남아 삶 속에 영속되고 있기에, 국가의 유공법에 의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그 정신이 퇴색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수구보수 일간지의 민주화운동과 그 민주투사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여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지 못한 까닭입니다.

작금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공헌에 대한 수구보수 세력의 언동을 보면서 장자크 루소의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명언이 떠오릅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부당한 공권력으로 억압하였던 잘못된 역사를 시인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받기 위하여, 후세대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명절인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 발전 공헌과 탐천지공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양 승 조



추석이 며칠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설, 단오, 한식, 추석에 4대 명절로 하여 풍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토론회인 이 자리에서 한식의 유래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문공(文公)은 오랜 유랑 끝에 진(秦)나라의 원조로 귀국하여 즉위한 후 나라에 공을 세운 이들에 대하여 포상하고, 신고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자추(介子推)라는 충신이 빠져 있어서, 그 이웃 사람이 개자추에게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왜 신고하여 포상을 받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망명생활로 병을 얻어 벼슬을 탐하지 않고 집에 있던 개자추는 “뭘 바라고 충의를 다한 건 아니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웃사람은 신고만 하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벗어날 수 있을텐데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며 재차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개자추는 “다들 모두 자신의 공로인 듯이 말하고 있다. 불꼴사나운 일이다. 탐천지공(貪天之功)을 다투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 더욱 수치스러운 행위다. 차라리 쟁신을 삼는 편이 훨씬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산으로 들어갔고 잿더미로 산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문공(文公)은 충신 개자추의 정신을 기리며, 그가 죽은 날엔 제사음식을 불을 사용하지 않은 음식으로,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식(寒食)의 유래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인양 도용함을 이를 때 사용하는 고사성어 탐천지공(貪天之功)의 일화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특히 선거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은 물론 독재권력에 발맞추며, 민주주의를 저해하였던 이들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켰다고 떠들어대기까지 합니다.

유신과 군사독재의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역사적·사회적 명예회복과 예우가 정당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요하게 이야기 될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의 정당성을 우리의 주요한 풍습을 돌이켜보며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십수년 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문

메모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즉각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병 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16대, 17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 네 번째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논의를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발전된 이 사회의 근간은 일제시대를 극복한 치열한 독립운동으로부터 정부 수립 후 지속되어 온 다양한 민주주의 회복 투쟁이다. 1945년 해방 후 수립 후 실질적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40여년¹⁾의 세월이 걸렸다. 해방 이후 신생 국가가 겪었던 민주주의 실험은 애초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채 시작됨으로서 역사의 청산이 무시되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급기야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독재의 길로 들어선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4.19혁명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설 기회였으나, 5.16군사 쿠데타로 좌절되고 만다. 박정희 군사독재의 질곡은 18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 농민, 학생들이 나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 전개하였고, 군부에 의한 강압적 독재정부가 청산되고 1990년대에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지금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생, 지식인, 노동자, 농민의 희생과 헌신이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과거사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사업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회(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회)’²⁾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운영되어 미흡하나마 민주화운동

1) 민주정부 수립에는 1993년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보는 견해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의 기본권 신장의 활동을 단지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신장에 기준을 둔다면, 국가 통치 행위에는 권위적 통치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온전한 민주주의 실현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노력과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2)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에 의해 설립되어 13,000여 건의 접수를 받아 2013년 안에 심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음.

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올해 안에 1차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1999년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함께 16대 국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 (이하,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제정되었다. 그나마 민주주의 신장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애초 민주화운동관련법이 제정될 당시 분출되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매우 미흡하게 제정되었다. 민주화운동 기간의 불명확, 대상자의 협소, 보상에 관한 원칙 미비,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사항의 미비 등 미흡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를 비롯한 제 단체와 관련자들의 노력으로 관련 법률이 두 차례 개정되어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진행되고 그 활동이 종료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과거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간 민주주의 투쟁을 억압하고, 탄압한 공안기구와 책임자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거 청산운동은 미완에 그치고 있다. 현재도 민주화운동과 국민의 인권을 억압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횡포는 계속되고 있어, 국정원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촛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다. 이는 완전한 과거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과 탄압의 주구 노릇했던 이근안과 같은 인물들에 대한 청산 작업의 미비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간의 과거 청산운동은 공과가 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청산운동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지고, 민주화운동의 헌신과 희생이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확장에 기여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제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2. 민주유공자법 논의 과정

1) 16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되어 제정

1999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1년 만에 2000년 12월 4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³⁾이 발의되었다. 당시,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위원회의 활동은 시

작 단계이고 심의가 종료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단,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부분부터 유공자 진입을 하자는 의견으로 2002년 1월 26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대표발의 이훈평의원)이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 가결되어 통과 되었다. 당시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공자 지정은 대체로 공감하였고, 당시 보훈처장⁴⁾도 '법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적극 동의한 바 있다. 당시 정무위원회 법률검토보고서⁵⁾(작성 : 민동기 전문위원)에 의하면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의무이고,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와 같이 당시,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대다수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2) 17대 국회에서의 논의와 제정 연기

17대 국회에서 2004년 9월 '민주유공자법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이 이호용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103명이 공동으로 발의되었고, 정봉주 의원 외 23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2005년 4월 국회에서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국경복 전문위원) 보고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의 취지의 한 갈래인 민주주의 발전에 포함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하여 법률의 제정 타당성은 있다'고 검토결과 보고하였으며,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사망·부상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데, 구금자의 경우는 10일 이상, 30일 이상 안이 있으며, 보훈처 의견은 30일 이상 구금자와 해직자 중 1년 이상 미복직자에 한하여 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5년 6월 공청회를 거치고, 수차례에 걸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런 논의과정을 거쳐 민주유공자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 진행되었다. 특히, 2006년 4월 20일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⁶⁾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3) 당시 민주당의원 이훈평의원의 대표 발의

4) 16대국회 '민주유공자법' 정무위원회 심사자료 중 대체토론의 요지 발췌(2001년 12월)자료 중 김유배 국가보훈처장 답변

5) '민주유공자법'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발췌(2001년 12월) -붙임자료 참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일 것임. (중략)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등에게 교육, 취업, 양로 및 양육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민주유공자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 역시 타당함.

률안'을 금번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신규 지정 유공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에 절차를 거치는 것이 또 다른 유공자들과에 형평성에 맞겠다는 국가보훈처 의견으로 논의 보류된다. 6월에 열리는 국가보훈위원회가 민주유공자법률안에 대하여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그동안 국회 논의를 토대로 신속히 타당성 있게 검토하여 9월까지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민주유공자법률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준비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2006년 4월 27일 제259 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의 회의에서는(2006년 10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자, 독립유공자 증손자 확대 법안을 논의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제정에 동의하였다. 당시 17대 국회, 정권 말기 국가보훈처는 입장을 바꾸었고, 참전유공자 확대 법안만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민주유공자법안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자동 폐기된다. 국가보훈처조차 반대한 참전자의 유공자 편입으로 국가유공자 폭증사태를 빚었다.

3) 18대 국회에서 논의 과정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6월 10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공청회가 개최(민주화운동정신 계승국민연대 주관)되었고, 2008년 8월 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유선호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68명이 서명하여 발의되었다. 2008년 11월 28일 법안소위 회부되었으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1년 4월 19일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여러 차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실질적 논의는 되지 못하고 2011년 6월 24일(일부의원 심의 보류에 문제제기), 8월 25일(전문위원실 준비 부족), 11월 23일 소위 연기, 12월 21, 22일 논의 보류, 2012년 2월 9일 안건이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법안에 대하여 제대로 된 논의와 절차 없이 폐기된 책임은 누가 져

6) 2006년 4월 20일 국회 259회 정무위 법안소위 1차 회의 "(전략)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망, 부상자...(중략)보훈처안은 30일 이상 구급자, (중략) 해직자중 1년 이상 미복직자로서(중략), 개인적 견해로는 구급자의 경우에 3개월 이상 구급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후략)"

야 하는가?

■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9월 '민주유공자법예우에관한법' 발의 기자회견 통해 문병호 의원 등 96인 국회의원 서명으로 법안 발의되었다. 2013년 4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6월 20일에 안건상정되어 논의 진행 중에 있다.

3.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1)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당위성은 이미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었고, 국민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 제정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여당의 이해 타산과 국가보훈처의 이중적인 행태, 야당의 무책임이 법 제정을 가로 막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법안 논의 과정을 보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무성의, 무조건 기피, 논의 연기의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논의 기피는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논의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유공의 입법 의무를 직무유기하는 만행일 뿐이다.

국회는 다양한 계층과 이해를 모아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마냥 토론과 논의를 회피하는 일부 여당 국회의원의 태도야말로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제쳐 놓고, 부마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다가 민주화운동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의 경우도 부마민주유공자법 우선 제정에 동의하였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늦게 깨닫고, 함께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당한 논의의 진전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의 이중적 행태와 논리의 모순

그간,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찬성하고 있었던 국가보훈처의 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돌변하고 말았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하여는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고, 제정에 반대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국회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무 부처의 강력한 반대가 법안 논의를 가로막은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결과를 아예 부정하는 태도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 기구(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인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하여 “일부 사건의 경우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제정의 국민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불신과 불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16대, 17대 국회에서 법 제정의 당위성에 동의하고, 구체적 논의까지 진행시켰던 태도에서 18대 국회와 정권교체로 불가라는 입장으로 돌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3년 6월 민주유공자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한다. 2005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어 유공의 민주영역을 명시하였고, 2006년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입법요구가 2000년 16대 국회부터, 17대, 18대에 이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용역이라니? 법 제정 반대를 위한 시간끌기이거나 부정적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보훈처가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에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과제지시서⁷⁾에 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없는 사건까지 언급하거나 부정적 결론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진위를 강하게 의심받고 있다. '왕재산사건'이 민주화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던 말인가? 국가보훈처는 제자리로 돌아오라!

3)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기피와 직무 유기

국회는 입법 발의된 법률을 논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하여 발의된 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하기를 반복하고 있다(17, 18대 국회). 특히, 18대 국회의 경우 2008년 8월 입법 발의된 이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1년부터 안건에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책무

7) 지난 2013년 6월에 국가보훈처가 '연세대사회과학연구소'에 발주한 과제지시서에 의하면 예시자 중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왕재산 간첩단 사건' 사례를 적시하고 있음.

를 망각하였다. 법안소위 이후에도 1~2번 정도의 논의(심도있는 논의가 아닌 검토 수준)밖에 진행되지 않거나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가 거의 무산되어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의 논의 회피 등으로 자동 폐기되고 만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며 직무유기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입법 기관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무시한 행위일 따름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조속히 민주유공자법률을 제정하기 바란다.

4) 국가보훈기본법에 기본 정신에 맞게 민주유공자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2005년 5월에 국가보훈기본법⁸⁾이 제정되었다.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국가보훈관련법들을 통합하고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미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 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을 국가유공자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자유민주주의 발전 공헌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이 법으로 일정하게 법적 근거와 함께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공감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야당(신한국당)도 동의한 법률이다.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보훈위원회는 2006년 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활동이 종료되는 즈음에 제정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심하게 반발)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역사적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5.18민주화운동이 보상법⁹⁾, 특별법, 유공자법의 순서로 제정되었듯이 민주유공자법은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 공헌자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도 민주유공자법은 제정의 당위는 확인되었으며, 전쟁유공과 별도로 조속히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8)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9) 2013년 3월 민주당 임내현의원을 대표발의로 22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을 '배상'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배상금 지급신청일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 국가보훈처의 역할의 제고와 축소

국가유공자가 대폭 늘어났다. 1990년대 10만 명에 불과했던 국가유공자가 2008년에 31만 명, 2013년 80여만 명으로 70만 이상 폭증하였다.(붙임자료4 국가보훈처자료 참조). 이로 인하여 조직이 비대해지고, 자신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도 구별 못하고, 실제 해야 될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보건복지부인지? 국방부(병무청인지)인지? 고용노동부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특수계층을 위한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단순히, 참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¹⁰⁾하거나 경찰, 공무원 등 공무 중 재해자까지 포괄하고 있고, 제대 군인의 취업까지 걱정하고 있다.

대폭 늘어난 국가유공자로 인하여서인지,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유공자 관련 법들의 개정안을 정부안(국가보훈처안)으로 제출하여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생활의 정도를 실사하고,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하여만 교육, 취업, 의료 등 각종의 지원을 하고, 재산과 수입이 일정 정도 있는 유공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킨 공헌에 대하여 그 정신을 존중하고, 예우하겠다는 유공자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채 기초생활수급권과 같은 사회복지적 의미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가보훈처는 축소, 폐지되어야 한다. 제대 군인에 대한 업무는 국방부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야 하며, 공무원 경찰 등에 대한 업무는 산업재해 관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은 극히 제한되어야 한다. 국가보훈기본법에 기본 정신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독립운동, 참전 등으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받은 분들과 국위 선양,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적극 포함되어야 한다. 특수 계층을 계속 우대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비대화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거시적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동의했던 국가보훈처가 18대 국회부터 반대하고 나섰다. 그 논리 중 하나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 미흡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 참전자 몇 십만명을 보훈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일에 당사자들 외에 누가 동의하였는지 모르겠다. 국가보훈처 스스로 국가유공자의 대폭 확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¹¹⁾ 이미 국가보훈법

10) 2008년 6.25참전유공자 22만명 등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폭등('08년「국가유공자 예우법」개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 공헌자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국가보훈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야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6) 뜯김없는 부마민주유공자법

박근혜 정권에 의해 18대 대선 공약의 하나로 제시된 부마민주화운동¹²⁾(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명예회복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5월 '부마민주항쟁 보상법'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로 제정된 것인데,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이 박근혜 정권에 의해 명예회복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되고 있다. 이미,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시행되고 결말의 종점이 다가오고 있다.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지만 부마민주항쟁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에서 수십명이 인정 결정을 받았으며, 다수의 미접수자들은 민주화운동보상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단시간에 따로 법이 제정된 것이며, 부마민주화유공자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미, 16대 국회에서부터 민주유공자법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고, 여러 이유로 제정이 늦추어지고 있는 이 때에, 수많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은 아연 질색할 수 밖에 없다. 특정 사건만 떼어내어 유공자법을 진행하다니? 이것이 법리와 상식에 맞는 일인가? 라는 격양된 반응 일색이었다. 상식이 있는 사회와 국회라면, 당연히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을 포함한 전체 민주화운동 예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부마민주유공자법'은 당장 통과시켜야 되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반대하는 비상식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 국가보훈처¹³⁾ 등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각각의 민주화운동을 지역과 부문으로 나누어 유공자법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인가? 정상적 사고를 가진 국회라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마민주유공자 단독 법 제정을 포기하고 부마민주유공자를 포함한 민주유공자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11) 2010년 작성된 '2009~2013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수정판)'(2010. 12. 국가보훈처)

(1) 현황 및 문제점에서 지나친 국가유공자 확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붙임자료3 참조)

12) 1979년 10월 26일부터 나흘간 부산과 경남, 마산·창원 등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운동이다.

13) 2006년 민주유공자법을 보류해야 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의견에는 민주화운동심의회에서 사건 심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위원회 구성도 시작되지 않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하여는 바로 '부마민주유공자법'이라는 명칭으로 통과를 밀어 붙였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강한 항의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4. 결론

민주유공자법은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 사회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합리적으로 토론되고 조정되어 가며 합의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일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토론과 논의를 회피하거나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이 시대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초점에 맞추어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며, 양보와 타협이 함께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 일관성도, 합리성도 결여하였다면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는 정부기구이며, 그 결정에 따르고 신뢰하여야 한다. 만일 그 결과에 불복한다면, 다른 절차(사법 체계 등)를 통해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여전히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잘못된 논리를 반복하는 국가보훈처 일부 관료, 일부 보수 언론, 일부 극우적 인사의 잘못된 언행과 행태는 바로 잡혀야 한다.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결정에는 승복하는 것이 기본적 민주주의 질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기구가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중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은 논리 모순이며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대상자 범위’, ‘또다른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등 ‘민주유공자법’ 조항에 여러 가지를 트집 잡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유공자법과 같은 수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법 제정을 가로막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민주유공자법은 더 이상 미루거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 통합 사업을 전개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부마유공자법’을 우선 제정하라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갈기갈기 찢어 각 부문 별로 각각 유공자법을 제정을 하여야 하는가? 이런 소모적 상황을 두고 국가보훈처 관료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다. 정부.여당은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더 이상 비논리적,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16대 국회부터 논의가 진행된 ‘민주유공자법’을 19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즉각 제정해야 한다.

[붙임자료1]16대국회 ‘민주유공자법’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발췌 (2001년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민동기) 발췌

이 제정 법률안은 2000년 12월 4일 이훈평의원 등 15인 외 10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것임.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법의 적용대상자인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육 등의 지원을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며, 국립5.18묘지를 설치하는 것 등임. 그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법제정의 필요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부상 또는 구속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분들의 민주화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일 것임.

현재 이분들에게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광주민주화보상법”이라 함)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이라 함)에 의거 보상금 및 의료지원비, 그리고 생활지원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예우와 지원에 있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이분들에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의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본 법률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함.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등에게 교육, 취업, 양로 및 양육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민주유공자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 역시 타당함.

[붙임자료2]17대국회 ‘민주유공자법’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5년 4월)
요지 발췌

1. 입법의 필요성

가. 법률 제정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점에 있어서 4.19민주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와 다른 점이 없는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중략)

다. 법제정의 시의성

현재 진행중인 민주화보상심의회가 종료된 후 예우대상자를 확정 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90년에 제정되어 2000년까지 4차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2004년 동 법률의 개정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2004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어 2005년 현재 5차 보상이 진행 중인 상태임. 따라서「5.18예우법」이 2002년에 제정되어 예우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민주화보상심의회와 더불어 입법을 통하여 민주유공자를 예우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붙임자료3] ‘2009~2013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수정판)’(2010. 12. 국가보훈처)에서 발췌

<p>1. 보훈체계 선진화</p> <p>1-1국민이 공감하는 보훈대상 체계 개편</p> <p>(1) 현황 및 문제점</p> <p><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범위의 지나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인정범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대상은 독립.자유수호전쟁(6.25, 월남전), 민주화의 역사를 반영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광범위하고 포괄적 - 국가공헌성이 미흡한 재해.부상을 「국가유공자」로 구분하는데 대해 다수 국민이 부정적 인식
--

[붙임자료4-1]보훈대상별 현황 - 보훈처 자료

보훈대상별현황				
(2008.04.30현재) 국가보훈처 자료				
구분	계	본인	유족	
합계	311,221	165,696	145,525	
	계	304,875	160,142	144,733
	소계	6,499	229	6,270
국가유공자	건국훈장	4,719	185	4,534
	건국포장	465	15	450
	대통령표창	1,315	29	1,286
	소계	297,435	159,483	137,952
	전몰순직·전공상군경	197,654	97,824	99,830
	무공수훈자	65,658	39,406	26,252
	보국수훈자	18,386	16,878	1,508
	재일학도의용군인	301	87	214
	4·19혁명희생자	383	241	142
	4·19혁명공로자	181	156	25
	순직·공상공무원	14,855	4,891	9,964
	특별공로순직자	17	0	17
	6·18자유상이자	368	160	208
	소계	573	270	303
	지원공상·순직군경	278	156	122
	지원공상·순직공무원	295	114	181
5·18민주유공	계	4,016	3,496	520
	사망·행불자	205	0	205
	부상자	2,597	2,346	251
	기타희생자	1,214	1,150	64
특수임무수행자	계	2,330	2,058	272
	사망·행불자	0	0	0
	부상자	0	0	0
	공로자	2,330	2,058	272

*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참전유공자 35만 명중 6.25참전유공자가 21만 명 국가유공자로 진입 예정. 보훈 대상 총인원 77만명 예상(2008년 예상의견)

[붙임4-2] 보훈대상별 현황(국가보훈처자료)

(2013년 7월말 현황) (단위:명)

대 상 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859,948	676,678	183,270
(고엽제후유증)‡	(42,909)	(34,391)	(8,518)
[순국선열]			
건국훈장	654	0	654
건국포장	29	0	29
대통령표창	59	0	59
[애국지사]			
건국훈장	4,237	81	4,156
건국포장	603	4	599
대통령표창	1,686	20	1,666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전몰군경	37,078	1	37,077
전상군경	117,932	62,832	55,100
순직군경	18,047	0	18,047
공상군경	63,029	52,619	10,410
↳(고엽제후유증)‡	(42,909)	(34,391)	(8,518)
무공수훈자	70,187	30,313	39,874
보국수훈자	29,590	27,054	2,536
재일학도의용군인	294	47	247
[4·19혁명]			
4·19혁명사망자	45	0	45
4·19혁명부상자	342	223	119
4·19혁명공로자	439	349	90
[공무원]			
순직공무원	8,757	0	8,757
공상공무원	5,990	4,242	1,748
특별공로순직자	17	0	17
6·18자유상이자	369	114	255
[지원대상자]			
지원순직군경	183	0	183
지원공상군경	1,849	1,816	33
지원순직공무원	220	0	220
지원공상공무원	586	557	29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119	0	119
재해부상군경	291	261	30
재해사망공무원	12	0	12
재해부상공무원	6	6	0
[참전유공자]			
6·25전쟁	173,632	173,632	0

월남전쟁	208,881	208,881	0
6.25및월남전쟁	3,247	3,247	0
고엽제후유의증	48,281	48,281	0
고엽제후유증2세	66	66	0
[5·18민주유공자]			
5·18사망자 또는 행불자	199	0	199
5·18부상자	2,730	2,377	353
5·18기타희생자	1,306	1,196	110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	8	0	8
특수임무부상자	1,139	1,118	21
특수임무공로자	2,411	1,943	468
중·장기복무제대군인	55,398	55,398	0

주. 제적(국적상실), 등급기준미달자, 단순수훈자, 희생자력 제외.

†합계는등록대상별현황의합계.실인원아님.()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에 포함(중복합산 안함)

‡ -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등록된 대상자 현황.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향에 관한 제언

-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국가보훈처
정책용역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 영 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1. 왜, 민주 '유공자' 예우가 필요한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자긍심 있는 '역사적 상징'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 '폭도' → 1987년 '화해' → 1990년 '보상' → 1997년 '책임자처벌'과 '배상' → 2002년 '민주유공자' → 2004년 '5·18 민주유공자예우'(개칭) 등의 과정을 거쳐 왔다. 자그마치 24년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5·18'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댕글질 하는 자들이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한 국가적·사회적 예우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분투한 민주화운동의 국가적 예우 역시 진행형이다. 민주화보상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3월 6일 성공회 성당에서 '민주화운동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1차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998년 4월부터 서울역에서 시작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신범 의원 외 27명의 공동발의로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을 위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안'이 7월 30일 발의되었다. 같은 해, 8월 향린교회에서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9월 1일 2차 학술회의를 통해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등 두 가지 법률 시안이 발표되었다. 보름 뒤인 9월 15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이 있었다. 그 후 법정정이 진척이 없자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11월 4일부터 무려 422일 동안 여의도에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하였다.

1999년 5월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안’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민회의측의 수정안이 제시되었다. 정부부처의 반대로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유공자’ 부분을 제외하고 ‘5. 18 특별법’ 수준의 법안으로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7월 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이 유선호 의원 외 91명의 국민회의 의원들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두 법안은 1999년의 막바지인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민주화보상법이 공포되었다.¹⁴⁾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은 애당초 국가 유공자 예우를 전제로 입법추진 되었지만, 2000년 ‘유공자 예우’가 아닌 ‘보상’으로 매듭지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사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2004년 9월 22일(이호웅 의원 외 102명), 2008년 8월 4일(유선호 의원 외 67명), 2012년 9월 27일(문병호 의원 외 95명) 등 수 차례 입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법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의 발의안은 2013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왜, 민주유공자법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문란’하게 만든 권위주의 통치를 청산하기 위해 제정된 과거청산 관련 법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민주적 규범 확립을 위해 민주유공자법은 하루빨리,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행이 ‘협약적’ 이행으로 마무리된 이래, 무력으로 정치권력을 찬탈하고, 정치권력을 악용한 ‘가해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약 15개를 넘는 한국사회 과거청산 법률들이 제대로 성안되기 어려웠다. 만일 민주화보상법을 통하여 정치적 암흑기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희생과 피해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회복’¹⁵⁾될 수 있었다면 민주유공자법은 굳이 필요 없을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은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을 금전적 ‘보상’과 형식적 ‘명예회복’으로

14) 이영재, 2005,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의 현황과 과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를 중심으로”, 추모연대·유가족·민주노총 『끝내 살리라』, 375-378쪽; 이영재, 2011, 『자유·희망·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동연), 358-359쪽.

15) <희생자 권리원칙>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해 배, 보상의 원칙과 방식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희생자 권리원칙>이 구분하고 있는 배상원칙과 방식은 배상모델의 핵심으로, 최대한 ‘원상회복’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다. <희생자권리원칙>에서 열거하는 배상방식으로는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만족’(satisfaction), ‘재발방지의 보증’(guarantees of non-repetition) 등이 있다.

맞바꾼 억지 ‘화해’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협약적 이행의 특성상 가해자를 단죄하기 어려운 정치적 현실을 십분 감안하고 본다면, 민주화보상법의 성패는 ‘명예회복’과 ‘보상’의 ‘실효성’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원회 ‘명예회복’의 강제력 없는 ‘권고’ 조치가 무력함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¹⁶⁾ 더 나아가 위원회는 사회적 명예회복에 대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나 언론화, 공론화 작업의 부재는 보수단체의 이념적 시비거리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을 뿐이다. ‘보상’의 성격도 5·18의 ‘배상’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말았고, 생활지원금은 민주화 활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관련자의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기괴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무엇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이고, 왜 명예회복이 필요하고, 명예회복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그 의미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명예회복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증서 한 장 쥐어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명예회복은 폭도, 빨갱이 오명 벗기와 더불어 법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차원에서 명예회복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민주화 유공 차원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회복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규범과 민주적 가치를 확립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이 버젓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이 이미 만연한 사회에서 민주헌정질서의 규범성은 조악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사회적 정의는 더 말할 나위 없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다한 분들에게 대한 예우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사회를 위한 희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민주적 규범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 바람직한 국민통합의 방향을 선도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동안 얽혀 온 과거청산의 매듭을 푸는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먼저 2.장에서 최근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을 당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국회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검토의견이 과연 유관 민주유공을 다루는 법률들과 형평성 있게 제시되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3장은 소관 행정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입법 영역의 검토의견과 행정부의 정책연구용역 사이에는 긴

16) 이영재, 2011, “과거청산의 현실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10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역사와 책임』 창간호, 46-51쪽.

밀한 연관성이 있게 마련이다. 2장과 3장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는 두 방향 모두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지난 2012년 9월 27일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013년 4월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조의섭)의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검토의견은 기존 ‘민주유공’ 관련 유관법률과 형평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최근 발의된 ‘부마민주유공자법’의 검토의견과도 충돌하고 있다.

1) 이중보상의 논란을 제기한 검토의견의 문제 (* 이하 밑줄 강조는 필자)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대하여 발생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임.

이러한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민주화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를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으로 한다)이 제정되어 사망자·부상자·기타 희생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한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보상과는 별도로 예우법을 제정하여 민주유공자라는 별도의 유공자범주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위원은 민주유공자법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보상과 별도로 예우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과 유공자 예우의 문제는 이미 일단락 된 문제라는 점이다. 유사 선례라 할 수 있는 광주보상의 경우 ‘광주보상법’ 제정(1990)이후 이 보상 시행과는 별도로 예우법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이 문제는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둘째, 민

주화보상법에서 ‘보상’은 광주보상법의 ‘배상’ 효력과 달리 ‘시혜적’ 보상의 성격이 강하고, 보상액의 평균에서도 광주보상의 보상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명예회복의 후속조치도 실효성을 갖지 못한 ‘권고’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소지가 되기 어렵다. 셋째, 사법부의 재심 과정에도 민주화 보상이 갖는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보상을 수령한 경우에도 사법부 재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동의’ 효력의 문제가 이중 보상의 문제로 논란된 바 없다. 따라서, 입법필요성에 덧붙여진 이 검토의견은 논란을 유도하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 의견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입법 발의된 「부마민주유공자법」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경우에는 이 이중보상의 문제가 검토조차 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이중 보상의 문제는 일단락 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민주화 기여 정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한 검토의견의 문제

현재 4·19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민주화 과정에서 현저하게 기여한 특정사건 관련자로 한정하고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민주화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전교조활동, 산업노조 투쟁, 학생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사건에 따라서는 민주화 기여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검토의견의 문제점은 첫째, 민주화보상법은 그 특성상 특정시기나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시기적·지역적 광범위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권위주의적 통치의 기간이 길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시기나 사건에 국한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4.19’, ‘5.18’과 같이 특정시기와 특정지역으로 한정한다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수백여 개의 사건과 만여 명에 달하는 개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는 행정적·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은 본 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항거주체’, ‘항거의지’, ‘항거대상’, ‘항거내용’ 등을 준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2조를 별도로 정하여 각 부문운동의 민주화운동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둘째, 검토의견은 ‘민주화 과정에서 현저하게 기여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여타 사건보다 민주화보상법의 민주화운동 정의에 부합한다. 일례로 광주보상법의 경우 일방적 피해자 및 희생자를 관련자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화보상법은 일방적 피해자를 관련자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항거의지’와 ‘항거행

위'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즉 민주화 '유공' 행위에 대해서만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보상법은 위 검토의견과 달리 오히려 민주화 기여 정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작다. 셋째, 검토의견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대해 '기여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심의는 어떤 위원회보다 절차적 엄밀성을 중시해 왔으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본위원회의 심의위원은 국회, 대법원, 대통령 각 3인의 추천으로 구성하여 위원들의 공정성, 정당성을 전제로 심의의 공신력을 배가하고 있는 바 민주화운동 요건해당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된 사건들에 대해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어렵사리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13년여 간 위원회를 운용해 온 성과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3) 민주화운동의 목적과 결과(공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의 문제

특정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우선시하여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관점과 달리 특정 민주화운동의 목적과 결과(공헌)를 함께 고려하여 보훈대상자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보훈의 영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민주유공자 인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검토의견이 제시한 위원회의 심의 관점, 즉 “민주화운동의 목적과 민주화운동 과정의 관련자 피해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화와의 관련성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의”한다는 견해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이 검토의견에 대한 발표자의 판단은 전문위원의 ‘자의적’ 견해로 제단된 위원회 심의의 관점 제시는 부단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의도는 국가보훈 영역의 특성과 위원회 심의 관점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측면을 부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기본적으로 민주화보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권위주의적 통치 여부를 판단하는 항거대상의 문제, 신청자의 항거행위의 민주화운동적 성격에 대한 판단, 민주화에 기여 여부를 중핵으로 하고 있다. ‘피해’의 경우는 신청자가 제시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통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 해당성에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심의의 핵심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검토의견의 우려는 오히려 역으로 5·18유공자예우법의 제정시 심각하게 고려되었어야 할 문제이다.

지난 2009년 4월 16일 전남대 5·18 연구소가 주최한 <5·18민주유공자의 보훈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가 제기한 문제이다. “5·18민주화보상법이 제정 당시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이라는 보훈의 관점이 결여된 것은 당시 평민당의 법률안이 5·18민주항쟁의 희생자를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로 보고 ‘배상’으로서의 성격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명확해진다. 평민당의 법률안은 폐기되었고, 당시 집권세력에 의해 제정된 5·18민주화보상법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국가적 예우’ 차원이 아닌, 특별한 형태의 국가배상으로 희생자에 대한 치유보상과 생활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 교수는 애당초 “5·18보상법이 민주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치유와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2년 5·18 관련자가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그 보상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맞는 동일한 차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즉 “5·18민주유공자예우법은 5·18민주화보상법이 안고 있던 미진한 보상내용을 그대로 존치한 채” 유공자예우법으로 전환하여 희생과 공헌을 가리는데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¹⁷⁾

민주화보상법은 5·18민주화보상법과 달리 본 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를 통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희생과 공헌을 가리는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검토의견은 민주화운동의 내용적 측면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고 난 이후의 후속조치 즉, 보상과 명예회복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어야 했다. 보상과 명예회복에 있어 5·18민주화보상법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 민주화보상법 역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기준에 희생과 공헌이 게재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보훈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은 민주화운동의 내용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공헌을 인정한 바탕위에서 어떻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예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검토의견의 문제

17) 민병로, 2009, “5·18민주유공자 예우제도의 개선방안”, <5·18민주유공자의 보훈현황과 과제> 자료집, 49-54쪽.

ㄱ)민주유공자에우법 제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이 완전 종결된 후, ㄴ)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유, 관련 사건의 성격과 민주화에 기여한 정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국가보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다음, ㄷ)이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보훈요구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위 검토의견은 불필요한 단서조항들을 열거함으로써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지연되기를 바라는 견해로 읽힌다. ㄱ) 광주보상법의 경우 보상작업이 완전 종결된 후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광주의 경우 위원회 심의가 2009년까지도 6차 심의가 진행된 반면, 유공자법은 이미 2002년에 제정되었다. 민주화보상위의 경우 이미 현재 심의진행률이 99%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민주화보상법 제2조가 정한 바는 국민기본권 확립 및 민주헌정질서에 기여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국가보훈의 취지와 달리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는 불필요하다. ㄷ) '4.19'나 '5.18'의 경우에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당시 국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 사건 어느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경우는 없었다. 이 문제는 기존 국가유공자 확대의 기준과 형평성 있는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이지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필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다.

5) 국가보안법의 예외적 적용을 제기한 검토의견의 문제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고 재심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제정안에 따른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시 별도의 심의기준에 따라 이적성 여부까지 면밀히 따지는 신중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심의되었다. 위원회는 불가피하게 국가보안법이 권위주의 정권의 편리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된 경우 그 사안의 내용을 따져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를 가려 왔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과거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경우(심의사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유공자 인정 후 그 당사자가 국가보안법에 저

촉되는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유공자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미래효'를 갖는 규정으로, 그 실내용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경우와 그 성격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성 심의 당시와는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전 반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불과 얼마전 국가보훈처가 사회주의 진영의 독립운동을 독립유공의 범주로 확대 인정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한다면, 과거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제외된다는 것은 민주유공의 취지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6) 일부 보훈단체의 반대 주장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검토의견의 문제

...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에서도 이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민주화보상법의 민주화운동 정의는 현행 민주헌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부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부정적 견해를 표출할 경우, 그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민주헌정질서 수호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 필요성이 보다 중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대상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시 한층 원호-보훈-유공의 차원으로 미래지향적 보훈행정을 지향하는 국가보훈처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3. 국가보훈처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

최근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입수되었다.¹⁸⁾ 과업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성격 및 국가 기여도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는 이 자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

18) 이 자료는 지난 2013년 8월 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강기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국가보훈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 성격 및 국가 기여도에 관한 연구」를 과업명으로 하는 「과업지시서」이다.

」에 대한 소관부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과업지시서」는 앞서 검토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보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먼저 다음 제시된 과업목적 중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희생과 공헌’ 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안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부산 동의대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남민전 사건 등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안 등은 유공자로 하기에 국민정서와 괴리

1)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훈처의 주장에 대하여

보훈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희생과 공헌’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8년 전 2006년 10월 19일 있었던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 결정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국가보훈위원회는 “① 민주화운동의 경우 4.19 및 5.18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사안들이 그대로 보훈영역에 진입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②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후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보훈영역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 사건인 4.19 및 5.18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포함된 것을 민주화운동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나, ‘기간’의 문제는 장기간 유지된 권위주의적 통치의 불가피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활동으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있는 바, ‘다양한 유형의 활동’ 역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5.18의 경우, 단순 피해자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민주화운동의 경우 단순 피해자를 배제하고 민주헌정질서 확립 및 국민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공헌’ 행위에 따른 희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시혜’ 성격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보훈’, ‘예우’,

‘유공’ 개념에 한층 부합한다.

2) 보훈처의 의도적 주장의 문제점

보훈처는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가 안 된 상황임을 부각하기 위하여 ‘동의대’, ‘왕재산’, ‘남민전’ 사건 등을 나열하고, 국민정서상의 괴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훈처가 문제 삼고 있는 부산 동의대 사건¹⁹⁾은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진압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는 사건으로, 위원회 심의 당시 동의대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진압 경찰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검토를 진행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당시 법원의 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대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진압경찰을 사망토록 했다고 볼 수 없고, 애당초 사건이 발생한 배경이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총기를 발사하며 과잉진압을 시도한 점, 관할 경찰서에 연행된 학생과 학생들을 연행하기 위해 사복으로 위장하여 체포 시도 중 학생들에게 붙들린 전경의 교환 합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점 등 여타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논란 끝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동의대 사건은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정체성 부정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건이다.

남민전 사건의 경우 워낙 큰 공안사건이다 보니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사건임에 틀림 없으나 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인정이유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판결문과 관련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건대, 제162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최석진, 박석률, 김남주 등 29명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자 유신체제를 타파할 목적으로 소위 남민전에 가입하여 반유신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남민전이 서울 일원에 배포한 8차례에 걸친 반유신 유인물 제작 및 배포를 민주화운동 활동을 인정한 것이다.²⁰⁾ 당시 남민전 사건은 공안당국에 의해 간첩단 사건으로 연론

19) 부산 동의대 사건의 배경 : '89. 3. 14. 임시부정관련 영문과 김찬호 교수 양심선언 → '89. 3. 21. '입시부정행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 총학 간부 등 50여명이 총장실 점거농성 → '89. 5. 1.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노동절 기념 청년학도 결의대회' → 14:20경 50여명의 학생들이 가야3 파출소에 화염병 10여개 투척 → 파출소장의 추격으로 정성원(경명3) 검거 → 동일 16:35 연행학생 구출을 위해 100여명이 화염병 50여개를 재차 투척 → 파출소장(김창호)이 칼빈 소총으로 공포 3발을 발사 후 재차 공포를 총 3회에 걸쳐 24발 발사하며 추적 후 해산 → '89. 5. 2. 14:20경 600여명이 파출소장의 공포발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300여명이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시위 중 장성철 등 8명 검거.

보도 되었으나 결국 간첩단 부분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별다른 근거 없이 행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 사건으로 남민전 사건을 제단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판단이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²¹⁾의 나열이다. 이 사건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접수된 바도, 당연히 심의된 바도 없었던 사건이다. 2013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신청접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위원회의 마지막 신청접수(제5차)는 2007년 이미 마감되었다. 실제 국가정체성을 부정한 사건을 왜 여기에 다른 사건들과 나란히 위치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예 위원회에 신청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 국민정서와 괴리된 민주화운동 사건으로 둔갑해 제시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국가보훈처의 경우 아마 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학생운동 당시 유죄판결 사안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은 이후 사건이고, 이 사건의 처리는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 판단하면 될 사안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받은 이후 발생한 간첩단 사건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의 사건 심의 전반에 대한 무력화를 겨냥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3)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전제한 과업내용의 문제점

-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건별 성격과 역사성 재조명
-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사건별 성격과 역사적 의미 연구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희생·공헌 등 국가에 대한 기여도 측정
-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훈대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 연구

2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joo.go.kr>) <보도자료> 참조.(2013년 9월 9일 검색)

21) 왕재산 사건은 '북한 225국(옛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국내 지하당 조직의 총 책임 하에 1993년 8월 김일성에게 수도권에 지도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모 씨가 지인들을 포섭한 이후 2001년 3월 '왕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남동공단 등을 폭파하고, 유사시에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관, 군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1년 적발됨으로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적발 후 2013년 2월 8일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무죄로, 사건 주도자 김모 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임모 씨 및 유모 씨 등 관련자들에게 징역 4-5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다.

보훈처는 2013년 5월 20일-10월 20일까지 5개월간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건별 성격과 역사성 재조명을 주문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1인, 연구원 1-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2000년 민주화보상법 제정 이래 13년 여 기간 동안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된 위원회 심의의 결과물과 달리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별 성격과 역사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는 곧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 심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훈처가 다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 과업내용은 '4.19'나, '5.18' 심지어 최근 입법발의된 「부마민주유공자법」에서도 고려된 바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취해 사회적으로 그 공적을 기리겠다는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가 보훈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떠한 영역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희생·공헌 등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전례가 없다. 이는 자의적으로 측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통합과 규범 확립을 위해 보훈처가 능동적으로 홍보하며, 그 유공의 가치를 선양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담당부서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애써 민주유공을 제외하겠다는 이유 외에 납득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보훈처는 이외에 과업내용에 “민주유공자 인정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설문조사 등 국민의 견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한 도출) ※ 설문은 지역별, 계층별, 성별 적정인원 안배(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 또한 현재까지 어떠한 보훈영역에서도 시도된 바 없는 내용이다. 이 과업내용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 예산으로 진행 중인 다른 보훈영역까지 포함한 전체 보훈대상 및 진입예상 영역에 대한 일괄 의견수렴을 실시해 국가 보훈영역을 재편하겠다는 큰 구상이 아니고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4) 민주유공자 인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전제한 과업내용의 문제점

- 민주유공자로 등록·결정시 심사방안 및 필요조직 등 검토
- 민주유공자 인정 시 심사방안 검토 및 대안별 장·단점 분석
- (예시) 1. 보훈심사위원회 산하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2. 국회, 대법원 등에서 추천하는 권위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민주유공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이 과업내용은 미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전제 하에 과업내용을 강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 '4.19'나 '5.18', 심지어 계류 중인 '부마민주유공자법'과 달리 별도기구의 신설이 전제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훈처의 입장은 2.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권위'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공고롭게도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던 방식과 같다.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추천 인사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권위' 있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권위'가 어떠한 권위를 의미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의 경우도 충분히 '권위'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4. 바람직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방향

'원호'로부터 출발한 현재 국가보훈 영역은 '원호'에서 '보훈'으로 영역과 내용을 확장한 것이지만 그 골간은 독재정권에 마련된 근간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문란과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 즉 민주헌정질서 파괴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민주화운동의 경우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대두된 새로운 공동체적 가치 영역이다. 다행히 '4·19'와 '5·18'의 경우 민주유공자로 예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 그 수준은 함량 미달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선양해야 할 가치가 '국권회복'과 '독립정신'이었다면, 전쟁·냉전기를 거치는 국난의 과정에서 '호국정신'이 중요한 국가적 가치로 제기되었다. 이 두 영역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기를 거치면서 민주헌정질서 수호에 대한 가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새로운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개인의 이익과 권리추구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 이기주의와 경쟁논리가 지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보훈처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를 어떻게 선양하고, 견인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²²⁾ 행여라도, 정치권력의 구

22)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추어 새로운 국가보훈의식과 보훈정책의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민주유공의 확대를 포함한 국가보훈의식의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호국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한국보훈학회 2007년도 춘계세미나) 자료집 참조.

미에 맞는 이념편향적 행정을 염두에 두거나 과거 답습식 보훈행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민통합을 향한 새로운 공동체 규범을 견인하는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

부마항쟁의 경우 민주화보상법에 포괄되는 시기와 대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6월 4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임에도 3·15의거나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는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특별법으로 특화되어 제정된 바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화보상법의 형식 요건이 유난히 까다롭고, 그 명예회복 및 보상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듯 민주화보상법의 형식요건상 한계를 지적하는 영역은 부마항쟁 관련자 외에도 '6·3' 관련자, '민청학련' 관련자, '6월 민주항쟁' 관련자 등 여전히 많다. 일일이 개별 사건들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유공자 예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유공의 방향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방향은 명확해진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과정 상에서 드러난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여 적극적인 국가정책으로 입안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유공자심사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별도 기구를 둔다면, 그 기구의 기능은 기존 호프만식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대신할 수 있는 민주유공의 적절한 척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민주화보상법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활동한 분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어떻게 민주화보상법이 포괄하지 못한 민주유공자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4·19' 유공자들의 경우 당초 국가적 명예회복 작업이 군부쿠데타 이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된 결과 상당수 관련자들이 활동 사실자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기간이 길었다. 최근 추가로 관련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반영한 일일 것이다. '5·18' 유공자들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유공'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주보상법이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4·19', '5·18'을 중심으로

민주유공의 길을 열었던 첫 시도의 시행착오여서 그런 것이라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고, 연이어 확대해야 하는 '민주유공'의 영역에 대해서는 앞선 선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땀질처방으로 사건, 사건마다 다른 기준과 대상, 방향, 예우기준을 적용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13년여의 시행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한계가 있다면 보다 나은 개선점을 동반한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기대해 본다.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²³⁾

이 상 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사)

1. 입법의 필요성

국가보훈제도에서 보훈보상체계는 유공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는 금전적 보상제도와 보훈대상자가 명예롭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로 나뉘어짐. 우리나라 보훈제도 관련법에서 금전보상과 각종 지원제도를 동시에 두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에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종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보훈보상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참고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에도 명예회복 및 보상과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는데, 이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지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님)

다른 발제자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함.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으로 4.19혁명관련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더욱이 19대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신속하게 심의되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23) 이 글은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종합의견서'(2013. 8.)와 '국가보훈제도로 본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 제정시 고려사항'(정태상, "이명박 정부에서의 과거청산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의의" 토론문)의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2. 국가유공자 운영현황

민주화유공자법안을 살펴보기 전, 우리나라 보훈보상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주를 '①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②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③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④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보훈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시급하다고 할 것임.

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훈보상체계

대상	적용법률	내용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급여금(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 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생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공 등의 이용지원, 주택우선 분양, 국내정착지원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 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참조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 /혁명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 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공로자, 전투중사군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급여금(보상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 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 수당, 무공예수당, 6.25전몰군경지녀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공 등의 이용지원, 주택우선 분양, 생업 지원,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 양로보호, 묘지에 의 안장, 고공 등의 이용지원
5·18민주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부 상자/그 밖의 희생자로 보상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공 등의 이용지원, 주택 우선 공급, 기념 /추모사업 추진

고엽제(월남전 참전 또는 국내전방 에 복무하여)	고엽제후유증 등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에 준 하여 보상과 예우
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망자/부상자/공로자로 구분하고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교육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 한 법률	직업훈련교육, 취업지원, 특수직종 우선고 용, 채용시 우대,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 지원, 주택우 선공급, 공공시설 이용, 법률구조지원

3.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가. 문병호 의원이 2012. 9. 27. 발의한 「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
유공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
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 (2)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3)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
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 (4)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
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
- (5)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
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부터 제63조).
- (6)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
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 할 수 있음(안 제66조).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1조).

나. 쟁점이 되는 사항

(1) 적용범위

1) 민주화유공자법안에서, 적용범위를 ‘민주화보상법’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으로 규정함.

보상제도와 지원제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5.18민주유공자법」에서도 적용대상자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이외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민주화보상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위원회가 ‘민주화운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우를 위한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법원도,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상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되 9인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의 선출방식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 시행령상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준사법적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3) 2012. 10. 당시 민주화보상심사위원회가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건)

구 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	상이	사망	합 계
인 원	6,285	2,343	320	684	123	9,755

자료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사위원회

2012년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은 68만 8,955명, 유족은 17만 5,750명임.

반면, 민주유공자에우법안의 적용대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건수는 9,755건이나 유죄판결과 해직, 유죄판결과 상이, 유죄판결과 해직과 상이 등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수로 환산하면 9,000명 미만일 것으로 예측됨.

그럼에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수를 인정 건수대로 9,755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유족 또는 가족은 2,487명(민주유공자의 25.5%)으로 추산. 즉,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합계는 12,242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86만 4,705명의 1.4% 수준.

4) 이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전무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4.19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과정에서 현저하게 기여한 특정사건 관련자’로 한정하는데 반해 민주유공자법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민주화 기여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기간의 정도나 활동의 다양성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으므로, 이에 따라 예우문제도 고려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임.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적극참여로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경우, 4.19혁명의 경우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국포장을 받은 경우 민주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으나, 「민주화보상법」이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보훈지원 내용의 적정성 문제

정무위원회 전무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2011. 9. 15.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2. 7. 1. 시행)에서 보훈 보상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였으므로(교육관련 제22조, 의료지원 관련 42조 등) 개편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위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부칙을 통해 개정 법 시행 이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하고 있음.

입법정책적인 문제이지만, 국가유공자법에서 기존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지원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바, 민주유공자법을 신속하게 제정하지 않고 입법 의무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민주유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함.

(3) 적용배제 법률에 국가보안법 포함 여부 문제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비판세력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권력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왔음.

그래서 유엔의 각종 인권 관련 기구에서도 국가보안법,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권고해 왔음. 예를 들어,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유엔인권규약(B)규약 제19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유사한 위반사례 재발방지와 금전배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할 것을 1999. 1. 초순경 한국정부에 통보했음.

정부도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인정했는데, 1999. 4. 11. 제네바에서 열렸던 55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 대표 장만수는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특히 표현의 자유 분야 등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함.

따라서,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항거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국가보안법의 전력을 민주유공자 배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음.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하여 「부마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만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역사의 왜곡을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며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진정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의 당위와 방향

송 병 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대표전문위원)

1. 개념혼란 - 민주화보상법과 민주유공자법

최근 ‘이석기사건’을 계기로, 일부 언론 등에서는 이 상황을 민주화보상위원회와 연결 지어 위원회의 그동안 14년여 활동이 ‘이적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것처럼 위원회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지으려 하는 행태가 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의 대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중대한 왜곡이며, 그럼으로써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동시에 ‘민주화보상’과 ‘민주화유공자 지원’ 간의 개념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교묘하게 문맥을 배치하여 위원회가 이석기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한 것같은 인상을 주는 내용(문화일보 2013. 9. 10. 사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해까지 모두 9,761명이 민주화운동유공자로 인정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24명, 제헌의회그룹 24명 ...이 포함”(동아일보 2013. 9. 10) 등 사실과 다른 기사 등.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도들에서 ‘민주화보상법’의 취지와 내용 및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실제 활동을 ‘민주화유공자’ 인정인 것처럼 개념을 뒤섞고 개념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유공자 131명 반국가단체 연루” 보도 등).

그러나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겪은 사건에 국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하고, 그럼으로써 희생자에 대한 위로와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법이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그 액수도 낮고 지급방식도 일회적이다. 즉 과거 권위주의 통치 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의 피해만을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보상해온 것이다. 민주화보상법은 따라서 미흡하지만 시급히 요청됐던 치유와 위로를 위한 제한적 특별법이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들은 그 희생과 피해에 대해 제한적 보상을 받았을 뿐(또한 입증자료의 문제 등으로 상당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도 못하였다), 결코 민주유공자로 충분한 보상을 받거나 고문 상처의 치유와 안정된 생활을 위해 제대로 지원을 받은 바도 없다.

이 점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화보상위원회가 ‘민주화유공자’를 인정해왔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며 피해자들이 응당 요구하고 향유해야 할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예우, 유공자로서의 권리요구를 차단하고 희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과 피해를 입은 이들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는 하는 것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이고,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이며, 민주화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성격이 다르고 상호간 배치되지도 중복되지도 않는다.

2. 국가보안법위반자 배제문제

민주화유공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이유는 명확하다. 광주 5.18유공자법의 제정에 비추어보아도 오히려 너무 늦은 상황이다. 그러나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중 가장 큰 쟁점은 민주화유공자법의 적용대상과 배제대상은 누구인가, ‘희생의 정도에 따른 지원정도와 수준’의 문제 등이 될 것이다. 특히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민주화유공자법에 포함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피해가 양산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의 한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해당 조항(제67조)는 적절하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 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배제에서) 제외한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하게 적용된, 특히 많은 사례들이 고문 가혹행위로 조작되고 과잉적용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에 대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3. 4.)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

다 하더라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고 재심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제정안에 따른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의견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다른 유죄판결자와 같이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배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와, 국가보안법 적용 역사를 도외시한 견해로 볼 수 밖에 없다. 유신시대 대표적인 반독재투쟁이었던 ‘민청학련사건’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구성죄와 형법 내란음모죄 등이 적용되었다. 오늘날 ‘민청학련사건’이 민주화운동임을 부정하는 이들은 거의 없거나 적어졌다. 많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들은 엄혹한 권위주의 통치 시기나, 이른 바 공안정국 상황에서 양산되거나 급조되었다.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자로 인정된 사건 수만 해도 1천5백여건을 넘고, 이중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만 해도 1,200여건으로 추정된다. 만일 국가보안법위반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제외한다면, 결국 절대다수를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수반한다. 또한 이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정권 이후를 구분하더라도,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 이후를 구분하는 등의, 시기별, 정권별 구분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반드시 ‘이적성’ 여부와 정도를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이 된다고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그만큼 포괄적이었고, 그 이적성과 위험성의 실체성 판단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1990. 4. 2.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현재의 위헌심판의 결과(한정합헌), 그리고 이를 반영한 1991. 5. 31. 국가보안법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이 개정취지대로 엄격히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던가에는 엄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위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의 형평”을 강조한 전문위원의 의견과 관련,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법의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위 타법상 규정과의 형평이 민주화유공자법의 국가보안법위반자에 대한 규정을 당연 구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5.18유공자법>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내란,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외환의죄-외국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 여적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살인), 제287조(미성년자약취유인), 제288조(추행)(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인신매매)(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약취유인등상해치상), 제291조(약취유인등살인치사), 제292조(약취유인등수수은닉)(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미수범)(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강간추행),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간음)와 제305조의 죄(13세미만미성년자간음추행),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강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강도상해치상,강도살인치사)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상습범)(제347조[사기], 제348조[준사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보훈처 등의 별도 심사문제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위반자 등 민주화유공자 대상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준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화보상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의결(인정결정) 결과이다. 오늘의 여러 발제문에서 이미 언급된 바, 민주화보상위원회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위원들의 결정과, 이 결정을 지원하는 조사인력의 전문적 검토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운영되었다. 위원회는 14년 이상을 지속하였고, 한 사건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1차-2차조사-전문위원 조사검토-분과위원회의-본위원회 회심의-재심>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왔다. 이러한 결정이 충분하거나 완전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한 과정을 거친 위원회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나 결정단위가 있을 수 있는가. 만일 그러한 별도의 조직이 시급히 구성된다고 해도, 그 조직이 민주화보상위원회 만큼 충실하고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다.

특히 보훈처 산하에 별도조직이나 '보훈심사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구상은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보훈심사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판단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위해 진행되는 조사나 검토과정을 전문적 식견을 지닌 인력이 수행하는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민주화유공자의 대상과 범주는 민주화유공자법에서 규정하되, 그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되는 대상사건의 여부는 기존 14년 운영되어온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유공자법 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4. 민주화보상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의 병행추진을 위하여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제 민주화유공자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지만, 문제는 그 대상자가 여전히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과, 추후에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가 명백히 확인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째 문제와 관련, 민주화보상위의 14년 운영기간 동안 13,000여건을 심의하였으나, 그 심의건수는 여전히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신청자들의 규모는 여전히 너무도 크다. 또한 김근태의 경우와 같이 명예회복만을 신청한 후에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자로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 그리고 장준하 사건과 같이 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중요사건들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민주화보상위에의 인정자 수는 여전히 적은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보상법을 개정,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인정자들이 유공자법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추후에 일부 국가보안법위반 범죄가 명백히 확인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건이 있다면, 그 판단은 민주화보상위원회가 계속 존속한다면,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 더 적합한 독립적 기구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주화유공자법의 제정과,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보상법과 광주유공자법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오지 않았던가? 이러한 병행적 과정을 거쳐야만 민주화유공자의 확대 및 그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민주주의 인식 증대 등 민주화의 미래 진전의 도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공헌과 역사기억

조 성 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장)

1. 국가가 기억해야 할 한국민주주의 발전 공헌자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민보상법)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시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민보상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이 일관되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사들에 대하여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을 우편으로 보낸 것뿐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를 어떤 학자는 동어반복이라고 한다. 즉 국가가 합법적인 폭력집단이라는 뜻이다. 어떤 학자는 이를 국가 범죄라고도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를 보면 ‘국가 폭력’은 동어반복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세력이 무려 30년이 넘었고, 부정선거로 집권을 연장한 이승만까지 보면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법하게 권력을 잡을 세력에 의해 통치되어 온 나라다. 합법적이지 않은 폭력집단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야당 지도자는 어김없이 죽임을 당했다. 조봉암이 그러하고 장준하가 그러하고 김대중은 사지에서 겨우 돌아왔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가 학생이든 교사든 노동자든 언론이든 직업을 불문하고 협박과 고문, 투옥 그리고 끊임없는 사찰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 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람도 있고, 정신이상자도 있다. 그나마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적합할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조선시대의 대역죄인과도 같다. 일제강점기도 그러했고, 해방 이후에도 빨갱이 낙인은 여전히 유효했다. 조선시대는 3대를 멸했지만 해방 이후 빨갱이 낙인은 3대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한국전쟁 시기, 눈앞에서 부모가 우리 군경에 의해 살해당하며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부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고 모인 피학살자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보냈고, 진실을 보도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발간 3개월 만에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켰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 진행한 빨갱이 낙인 사건이다. 이후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조직도를 그려 빨갱이로 낙인찍어 감옥에 보냈고 민청학련의 경우 8명을 사형시키기도 했다. 조업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넘어갔다가 되돌아 온지 십 수 년이 지난 이후 간첩으로 조작해 10년 넘게 감옥에 살았던 사람도 부지기수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도 이전 박정희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잡은 정권이기에 간첩이라는 낙인은 정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광주항쟁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이런 광주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대학에 경찰과 안기부 직원이 상주하고, 몇 분 동안 아니 몇 초 동안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려는 학생들은 여지없이 1년 내지 1년 6개월 기간 동안 감방으로 보내졌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러한 학생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천의 경우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영등포, 구로 공단에 이어 부평, 주안, 남동공단에 대규모 공단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취업을 해서 생활하였다. 노동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조건이었고, 이러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도 안기부와 경찰은 여지없이 노조결성에 앞장 선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 서슴지 않았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건으로, 동일방직 노조 탄압사건, 대한마이크로전자, 대우자동차, 경동산업, 동보전기, 반도상사 등 부평공단, 주안공단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수 없이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회사측과 공안기관은 여지없이 이 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여왔다.

87년 전국적인 대규모 민주항쟁이 있기 전, 인천에서 86년 5월 3일, 주안 시민회관에

서 대규모 민주항쟁이 있었다. 이 항쟁으로 구속된 사람만 시민 노동자 학생 등 129명이다.

이렇게 인천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또는 독재정권의 불법적인 횡포에 항의하다가 해직되고 구속되고 부당한 노동자들이 민보상위에 본인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신청하여 인정받은 사람이 344차 위원회 회의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람이 636명, 불인정된 사람이 107건이다. 어찌 이들 뿐이겠는가? (첨부자료 참조)

2. 우리는 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가?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에서 유동우 선생을 초청해서 그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과거 인천 주안공단에 위치한 삼원섬유에 취업하여 노동운동을 하며 ‘어느 돌맹이의 외침’이라는 책의 저자이며 노동자다.

그는 소위 ‘학림사건’으로 남영동 대공본실에 끌려가 37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여 몸은 만신창이 되고, 정신은 고문으로 인하여 황폐해졌고 공황장애로 아직까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후 가족은 떠나가고, 하나 있는 딸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역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최근 아버지와 화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김근태 치유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혼자 있거나 밤이 되면 누가 불쑥 들어와 잡아가는 환영을 보거나, 고문 받을 당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한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 유동우 선생은 박종철이 고문당하며 죽어간 남영동 대공본실 509호에서 고문당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고문당해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김근태를 추모하는 ‘김근태 치유센터’에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어찌 유동우 선생뿐이겠는가?

일제강점시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한 후 유해도 찾지 못하고, 그의 아들은 6살 때 독살되었고, 부인은 귀국도 못하고 타지에서 죽었고, 사촌동생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투옥되고, 조카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탄압받고 투병 중 사망하였다. 단재 신채호가 그러했고,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성숙이 그러했다. 일제에 적당히 협력하면 별 탈 없이 잘 살았을 사람들이 몸과 재산 받쳐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기억하기는커녕 그 후손들은 비참하기 이를 대 없는 생활을 하면서

선조들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외면하면서 살았으면 아무 탈 없이 잘 살았을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저항하여 젊은 청춘을 받쳐 민주화운동을 한 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또 민주화유공자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첨부자료>

■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 인천지역민주화운동신청(1차~344차까지)분류 결과

1. 개요(전국 17,125건 중 인천 829건)

신청유형	심의결과		성 별	
	인정	불인정	남	여
명예회복	745	636	469	276
보상	58	27	50	8
기타	26	26	10	16

2. 인정자

명예회복	636	남	387
		여	251
보상	27	남	24
		여	3

3. 불인정자

명예회복	107	남	82
		여	25
보상	31	남	26
		여	5
기타	26	남	10
		여	16

4. 시기별

시기별	총신청수	인정	불인정
유신 및 박정희 정권	146	117	29
신군부	23	11	12

전두환 정권	391	340	51
노태우 정권	223	190	33
김영삼 정권	42	6	36
김대중 정권	3		3

5. 직업별

노동자	교사	시민사회 활동가	학생	농어민	정당인	언론출판
458	53	39	230	7	6	5
공무원	군인	노점상 철거민	종교인	문화예술인	기타	
4	4	2	2	1	17	

6. 주요사건 별

년 도	사건명	총사건수	인정	불인정
1974	반도상사 노조 건	2		2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사건	128	109	19
1985	대한마이크로노조 건	25	23	2
1985	대림자동차 노조 건	2	2	
1985	동국무역 노조 건	2	2	
1985	동보전기 노조 건	8	8	
1985-1987	대우자동차 노조 건	36	32	4
1986	5.3인천시위 건	74	62	12
1986	민족해방노동자당 건	2		2
1987-1989	경동산업 노조 건	17	10	7
1990	대한트랜스 노조 건	3	3	
1995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10		10
1989-1990	노동자 대학 건	6	4	2
1991-1992	노동자문화마당 '일터' 건	4	4	

민주화운동 상이자

백 승 평
(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운영위원)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상이자의 실상

① 부상의 원인

- 조사 과정에서의 고문, 폭행 등으로 인한 상이
- 정보기관 및 관련기관원의 테러로 인한 상이
-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진압·연행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인한 상이
- 구금시설에서의 폭행 및 진료해태로 인한 상이
- 민주화운동 항거 행위로 인한 상이

② 민주화보상심의회위원회 심의 결과

- 민주화운동 상이 인정자 : 852명(등급자 669명, 등외등급자 183명)
- 민주화운동 상이 신청자 대비 인정률 : 60.6%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위원회 접수·심의 현황('13.5.24. 현재)

(단위 : 건)

구 분	계	보 상			명 예 회 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접수건수	13,364	1,757	351	1,406	11,607	7,826	3,183	598
심의건수(99.2%)	13,252	1,715	330	1,385	11,537	7,778	3,168	591
인용(74.0%)	9,810	815	126	689	8,995	6,385	2,292	318
기각(26.0%)	3,442	900	204	696	2,542	1,393	876	273
취하건수(0.5%)	78	28	14	14	50	32	12	6
잔여건수(0.3%)	34	14	7	7	20	16	3	1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등 지급인원 ('13.5.24. 현재)
(단위 : 건)

구 분		인 원
총 계		4,931
보상금	소 계	790
	사 망	125
	상 이	669
생활지원금	소 계	4,141
	구 금 자	3,055
	해 직 자	903
	등외판정자	183

자료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 이상 통계 수치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체 민주화운동 관련 신청 건에 대한 심의 인정률이 74%인데 반해, 상이 인정률은 60% 정도로 결과가 나옴.
- 이는 민주화운동 상이에 대한 입증 자료의 요구가, 수십년이 경과된 상이에 대하여 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의 제출, 진료비 내역 제출, 전문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식의 과도한 입증요구로 기각률이 다른 민주화운동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음.
- 의무기록 등의 제출은 의무기록의 보존기한이 통상 5~10년인 상황이고, 그마저도 개인의원의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의무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 더군다나 70~80년대 소위 '막걸리보안법'이 통용되던 엄혹한 정세 속에서 민주화운동 항거 행위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병원을 내왕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민간요법 등을 활용하여 자가치료를 한 경우, 또한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민주화운동 상이자의 경우 의무기록 제출 자체가 불가능함.

② 민주화운동 상이자의 현재적 상황

-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자의 경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인정자나, 기각된 상이자가 공히 대부분 상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생활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빈곤과 질병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

하여, 신체적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정신과적 상이 인정자가 아닌 경우에도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²⁴⁾ 등 정신적 건강도 위험수치에 다른 경우가 많음
- 또한 경제활동의 미비로 인하여 빈곤계층으로 살아가며, 주거문제,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회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강박감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2. 민주화운동 상이 사례

① 본인의 사례

- 본인은 정부기관인 산림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며 소일하고 살았는데, 1976년 가평군 회곡리 가평경찰서 정보과 형사 2명이 느닷없이 찾아와, 그길로 연행되어 9일 동안 불법감금되어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으며,
-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김○○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며,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받고, 서대문구치소에 4개월 여간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 서대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유신정권의 문제를 자유롭게 발언한 내용을 청와대 경호실에 신고한 고발자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항의하며 다투어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을 위반으로 다시 구속되어 2년 여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만기출소하였다.
- 출소한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사찰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한 폭력과, 수감생활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② 배우자 정정자의 사례

- 본인의 배우자인 정정자는 서울 천호동 소재 광신교통주식회사에 안내양교양주임

24) 상이자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가 많아, 질병과 상이로 오는 통증의 자각증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알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겸 기숙사 사감으로 재직 근무하던 중 1981년 5월 경 안내양 교양 업무 중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대하여 교양 교육 발언을 하였는데.

- 이후 1981년 9월 15일에 성남경찰서에 연행되어, 7일간 잠을 안재우고 고문과 폭행 등을 일삼으로 조사를 받아 이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으며, 오른쪽 귀의 청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음부를 집중적으로 구두발로 차는 등 성폭력까지 무자비하게 당한 것은 물론 “빨갱이년이니 새끼를 못 낳게 하겠다”며 하복부를 구두발로 차는 것은 물론 짓밟는 폭력을 수십차례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달에도 몇 번씩 시뻘건 피를 쏟는 하혈이 빈번하였다.

- 경찰의 조사는 단순히 광신교통에서의 교양교육 내용을 넘어서 간첩 활동을 하였다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고문과 폭행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정정자의 사법부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서, 15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순화교육(삼청교육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광주사태는 광주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일어났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전두환을 욕하고, 광주사태를 이해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등이 요지였는데, 경찰 조사시에는 막연히 어느 바닷가에서 일본 조총련 할머니를 만나 지령받은 사실을 자백하라며, 허무맹랑한 허위자백을 고문과 폭력까지 동원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또한 “김대중과는 언제 어디에서 만나 사상교육을 어떻게 무슨 내용을 받았느냐?”,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교육은 어떻게 받았느냐?”는 허위자백도 강요하였다. 이처럼 조사과정의 강요한 허위자백을 보면, 당시에 국가 정보기관에서 횡행하였던 조작간첩사건 만들기 과정이었던 것이다.

- 배우자 정정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 여간 수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 후 건강이 악화되어, 몸이 불편한데다 취업만 하였다 하면 정보과 형사들이 직장으로 찾아와 이어나 상무들을 만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을 받은 여자간첩이 이 회사에 들어와 있다”고 허위사실을 알리고, 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등 협박하여, 정보과 형사들이 와 즉시 해고된 경우가 5회에 이르며, 이렇듯 일상적인 가혹한 정보기관의 감시와 인권유린에 시달렸다.

- 고문과 폭행으로 망신창이가 된 신체에, 강제 해고 등 경제활동마저 제약받으며, 생존의 위협으로 삶의 희망을 잃고 수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고통은 아무런 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 2000년 공포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따라 배우자 정정자도 상이와 유죄판결,

해직에 대하여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과정까지 거치며 어렵게 인정되었으나, 상이의 경우 정신과적 후유증이나 고문에 의한 부인과적 질환 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수원교도소 수감 과정에서 얻은 족부동창에 대하여만 인정을 받은 실정이다.

- 현재 배우자 정정자는 이역만리인 7년 여 째 미국에 있다. 2006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관련이 있는 분의 주선으로 UN인권위원회 고문방지프로그램과 관련있는 단체인 PTV²⁵⁾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고문으로 인한 족부동창과 청력장애 시각장애 등에 대하여 모두 인정받았는데, 가장 심각한 증상은 정신적 심각성과 높은 자살 위험성으로 집중 치료를 요한다는 결과였다. 심사결과에 따라 배우자 정정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언어소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 놓인 채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 더욱 암담한 것은 배우자가 치료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배우자가 받고 있는 치료의 병명은 중증 우울증으로 재발성 심각한 정신병의 범주라고 하는데, 이런 진단명으로 인하여 미국에서의 출입국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상과 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의 사례를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를 들어 밝혔는데,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이자들의 경우 본인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참담한 현실에 놓은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들은 상당히 많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3년이 경과되었지만, 법률 제정의 취지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나 생활안정에 도달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나, 여타의 국가유공자들과 같은 연금이나 금전지원에 대한 안은 배제되었고, 교육이나 의료, 취업, 주택지원 등 지원 법안도 실질적인 혜택에 기대할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허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생활안정, 민주주의 발전의 공헌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실질적이며 실재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본인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허다하게 존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주화운동 상이자들을 더 이상 빛좋은 개살구로 우롱하지 말고 온전한 명예회복과 응당한 예우의 정책을 입안하길 촉구한다.

25) 미국 고문피해자 치료센터

구로동맹파업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고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노동자의 인간선언 투쟁이었다

김 준 희
(구로동맹파업 참가자)

당시 사회적 배경과 노동현실

1970년대 당시 한국사회는 박정희 시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해 섬유, 봉제로 총칭되는 의류업, 가발공장 등이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룰 정도였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발공장으로 의류제조업체에 취업하기위해 서울로 서울로 모여들었던 진풍경이기도 했던 것이다. 마땅한 거처가 없던 여성노동자들에게 기숙사를 지어 밤 10시면 소등하게 하고 12시간 14시간까지 연장철야를 시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당시의 전두환정권은 80년대 12.12쿠데타로 들어서면서 70년대 민주노조들을 각각이 강제로 해산시키고 공장에서는 숨도 못쉬게 7-80프로가 기숙사와 공장을 왔다갔다하며 오로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조건이 강제되었다.

실제로 제가다니던 섬유업체에서는 한 장하면 한번누르는 매수체크기가 있었고, 한 개인당 시간당 몇장하고 전체는 몇장을 하는지, 50여 명 되는 라인 앞쪽 중심에는 한시간에 몇장했다는 전자숫자판이 시간별로 체크되고 있었으니 사람이었다기 보다는 생산을 하는 기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었다.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기 보다는 각각의 자기공정으로 이름이 불리어 졌는데 예를 들면, 시다하는 사람은 “시다야”, 단추다는 사람은 “마도메야”, 카라를 다는 사람은 “애리달이야” 등 이런 식으로 불려졌으며, 그것은 사람을 의류의 한부속품으로 관리자들은 대했고, 아마도 노동부나 정권들도 그런 취급을 한게 아닌가 싶다.

구로동맹파업의 발생배경

‘구로동맹파업’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대우어패럴 노조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조처였다. 경찰은 4월의 임금인상 투쟁 때 파업농성을 주도하며「노동쟁의조정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985년 6월 22일 오전 11시 경찰이 대우어패럴 노조사무실로 찾아와 김준용 위원장, 강명자 사무국장, 추재숙 여성부장 등 3명을 연행하고, 조합간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노주결성 1주년행사가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치러지고 노조가 안정화 되어가면서 임금인상투쟁에 예전에 없었던 600명 이상 참여의 투쟁이 크게 움직여지는 것을 보면서 정부차원의 대응으로 보여졌다. 그전에도 상시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상주해 있으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였고, 준법투쟁이 있을 때 마다 경찰들이 때로 몰려와 지키고 시위장면을 찍어갔으며, 또 한편으론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이니 하면서 노동부관 약사무소 조사를 받았으니, 합법적인 노조활동 조차도 수시로 감시 통제를 받은 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대우어패럴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조치는 노동운동진영에 전두환 정권이 노동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려는 신호탄으로 인식되면서 함께 연대했던 노동조합들에게 ‘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이미 대우어패럴 이외의 타 노조간부들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장 연행 소식을 전해들은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1백여 명이 총무과로 몰려가 고발 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전개하였으며, 다음 날인 23일에는 가리봉전자, 효성물산, 선일섬유, 청계피복 등의 노조간부 2백여 명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4일부터 동맹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구로동맹파업은 1985년 6월 24일 구로공단의 노동조합들이 연대하여 벌인 파업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동맹파업이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게 된다.

구로동맹파업의 내용

1985년 6월 22일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3명이 구속되자, 대우어패럴 노조는 위원장 석

방, 노동3권 쟁취, 노동부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파괴 공작에 강력한 반격이 필요하다고 느낀 효성물산, 가리봉전자, 세진전자, 청계피복, 선일섬유 등의 노동조합은 곧바로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6월 24일을 기해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구속된 김준용 위원장 등 노조간부의 석방과 노조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노동약법 폐지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회사 측은 단전과 단수 조치를 단행했으며 경찰은 이들 공장 일대를 철통같이 경계했다. 공단 일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6월 25일 남성전기 조합원 3백여 명이 오후에 농성을 벌이고 세진전자 노조원 250여 명, 롬코리아 1백여 명이 지지 철야농성을 하는 등 연대투쟁은 7개 업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 및 재야의 지지도 이어졌다.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 22개 단체에서 지지 농성이 있었고, 26일 오후에는 서울대생 2명이 ‘구속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대우어패럴 맞은편 협동봉제 공장에 올라가 지지 구호를 외치는 등 학생들의 지지 시위가 있었다. 27일에는 효성물산 80여 명과 청계 노조 조합원이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에 몰려가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들의 공포 분위기 조성과 음식물 차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탈진과 실신 그리고 병원후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우어패럴 농성시위대는 1백여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효성물산과 선일섬유 노조는 26일 밤에 농성을 풀었고, 가리봉전자는 27일 관리직 남자 직원들에 의해 강제 해산 당했다. 대우어패럴에서는 노사간 협상이 6월 28일 있었으나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회사가 거절함으로써 30분 만에 결렬된다. 농성은 6월 29일,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굶주리며 버티던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이 작업장 벽을 뚫고 진입한 관리자와 구사대들에 의해 강제해산당하면서 막을 내렸다. 구로동맹파업에서 정부는 경찰을 투입하여 농성을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구속 36명, 불구속 56명, 즉심 27명이었으며 그 결과 2천여 명의 노동자가 구속, 해고되거나 강제사직 당하였다.(나라기획포털-국가기록원)

투쟁 이후

이후 모든 노조간부들은 구속되었으며 대우어패럴 노조원들 같은 경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공장 밖으로 쫓겨났으며, 아직 어리지만 했던 18세의 고등학교 공부를 하던

학생들도 많았지만 그 이후의 학습권 조차도 당연히 박탈되었으며, 블랙리스트 등이 공단마다 돌아서 몇 번의 해고들을 당하고 취직을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다반사 였고 그로인해 생계가 오랫동안 안정되지 못하였다

그이후 민주화 보상법이 통과되면서 당시 파업참여 노동자들의 일부가 민주화운동 생계지원비를 보상받았으며 아직도 연락이-당시에는 핸드폰 등이 없었음- 되지않은 많은 노동자들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탄압에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해고와 블랙리스트 등의 생계불안상태에 대한 고통을 기억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자기인간선언 투쟁이 힘을 가진 국가폭력에 의해 탄압을 받았고, 그 투쟁으로 인해 전노협, 현재의 민주노총들이 탄생한 것을 보면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함께 뭉쳐서 대응해야하는 큰 교훈을 안긴 사례이고, 마땅히 민주주화운동의 한 핵심이 됐음을 밝힌다.

참고자료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2
----------	------

발의연월일 : 2012. 9. 27.

발 의 자 : 문병호·강기정·강창일 김경협·김기준
·김동철 김미희·김상희·김선동 김
성근·김성주·김영록 김영주·김영환
·김우남 김윤덕·김재운·김춘진 김
태년·김현미·노영민 노용래·노회찬
·도종환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
남춘·박민수·박범계 박수현·박영선
·박완주 박원석·박홍근·배기운 배
재정·백재현·부좌현 서기호·서영교
·신경민 신기남·신장용·신학용 심
상정·심재권·안규백 안민석·양승조
·오영식 이상호·우원식·우윤근 원
혜영·유기홍·유대운 유성엽·유승희
·유인태 윤관석·윤호중·윤후덕 은
수미·이낙연·이목희 이미경·이석현
·이용섭 이원욱·이윤석·이인영 이
종걸·이춘석·인재근 임내현·장병완
·장하나 전병헌·전정희·전해철 정
진후·조정식·주승용 진선미·최규성
·최민희 최원식·최재성·최재천 추
미애·홍영표·홍익락 홍익표·홍종학
·황주홍 의원(96인)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

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및 제63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존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1조).

법률 제 호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인권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이하 “민주유공자”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2. 민주화운동부상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3. 민주화운동희생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퇴학 및 정학에 한한다)를 받은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 원칙)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변동신고)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5.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7.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을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 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교육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품위유지 의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3조 각 호의 학교(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인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

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4조(취학시킬 의무) ①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입학 절차) 제1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취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인학교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원연한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학습보조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高齡)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때 복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27조(업체등의 신고) ①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과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6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경우

2.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3.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4.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의 취업지원 연령,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8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제30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인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제31조(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 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근무 경력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제32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제34조(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② 제22조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2조·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

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2조, 제24조,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직업훈련)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할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우선 실시비율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지원

제37조(의료지원)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38조(진료) ① 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쳐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희생자
2. 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철구 지급)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대부

제42조(대부)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

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제43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대부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유공자
2. 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민주화운동희생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제44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45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45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46조(대부의 한도액) ①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제47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하되,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이 둘 이상의 대부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변경할 수 없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으면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한다.

제49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 대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상환(分割償還)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據置) 후 12년
2. 주택대부: 20년
3. 사업대부: 15년
4. 생활안정대부: 5년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주택의 분양 등) 국가보훈처장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4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부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51조(보조금 지급)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와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는 사람은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부금 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받을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만으로 채권보전(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

⑦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황이 끝나면 저당권(抵當權)의 말소(抹消)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3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43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競落代金)의 배당금 한도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4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

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부의 승계) ①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 중에 사망하면 그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承繼)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리할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6조(양로지원)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양육지원) 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20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9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61조(주택의 우선 공급)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3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용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기념·추모 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립묘지 경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5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교육비, 제36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8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64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4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 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의 죄

4.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뇌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민주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과태료) ①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6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1조 내지 제18조).

나.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한다(안 제37조 내지 제41조).

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9조 내지 36조).

라. 기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 수송시설 무료이용, 공원 무료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안 제56조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한다.

나. 동법안 제5장(제42조 내지 55조)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사업비의 경우 국가보훈처 일반회계 예산을 보훈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국가보훈처 예산에 포함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이루어져 회수가 가능하므로 본 법안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라고 보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 제외한다.

다. 동법안 제56조는 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추계에서 제외한다.

라. 동법안 제60조에서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추계에서 제외한다.

마. 동법안 제6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이천에 민주공원이 조성 중에 있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개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4년 64억 6,8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41억 2,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교육지원	81	83	85	87	89	425
의료지원	6,387	6,567	6,744	6,912	7,085	33,695
계	6,468	6,650	6,829	6,999	7,174	34,120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전 광 희

(02-788-4648, jkhee9652@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상

(1) 교육지원(안 제11조 내지 제18조)

법안은 제2장에서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규정하여 수업료에 대한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의료지원(안 제37조 내지 제41조)

법안은 4장에서 국가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규정하여 진료비에 대한 국가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방법

〈 비용 추계 방법 〉	
추가 소요비용	
= 교육지원액(학습보조비+수업료등 국비보전+사립대 등 수업료보전) + 의료지원액(보훈병원 진료+위탁진료+보철구 지급)	

2. 교육지원(안 제2장)

법안은 제2장에서 교육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6조에서 수업료 등의 면제, 제17조에서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에서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안 제4조에 따른 민주유공자는 아래와 같다.

[표 1]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 현황

구 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	상이	사망	합 계
인 원	6,285	2,343	320	684	123	9,755

자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수준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보훈대상자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은 68만 8,955명이며 유족은 17만 5,750명이다. 현재 보훈대상자의 수를 감안하여 안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는 9,755명, 제 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2,487명(민주유공자의 25.5%)으로 보아 추계한다. 이럴 경우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합계는 모두 12,242명으로 보훈대상자의 1.4% 수준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가 2012년에 지급하는 교육지원 예산을 보면 ‘학습보조비’는 16,133명에 23억 8,900만원, ‘수업료등 국비보전²⁶⁾’은 951명에 19억 6,500만원, ‘사립대 등 수업료보조’은 17,586명에 502억 6,600만원이다.

따라서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교육지원액은 2012년 ‘보훈대상자’의 1.4%수준으로 추계할 경우 ‘학습보조비’는 3,340만원, ‘수업료등 국비보전’은 2,750만원, ‘사립대 등 수업료보조’는 7억 370만원 등 총 7억 6,460만원이다. 이를 물가상승률²⁷⁾을 감안하여 추계하면 2014년 8억 1,000만원이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42억 5,000만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²⁸⁾.

[표 2] 법안에 따른 교육지원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계	81	83	85	87	89	425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6) 법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간 중에 교육지원 대상자가 부담한 수업료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임

27)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2.5. p.8 2013년 2.7%, 2014년 2.8%, 2015년 2.7%, 2016년 이후는 2.5%임

28) 안 제17조는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의료지원(안 제2장)

법안은 제2장에서 의료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안 제38조에서 보훈병원의 진료와 위탁진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9조에서는 보철구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또는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근접 진료를 위해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진료를 위하여 2012년 국가보훈처가 집행하는 예산은 2,357억 5,200만원이며, 위탁병원 진료에 집행하는 예산은 1,914억원이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보철구를 지급하는 비용은 54억 5,400만원이다.

위의 교육지원금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현재 보훈 대상자의 1.4%로 보고 계산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2014년 63억 8,700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336억 9,500만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표 3] 법안에 따른 의료지원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보훈병원 진료	3,481	3,579	3,675	3,767	3,861	18,363
위탁진료	2,826	2,905	2,984	3,058	3,135	14,908
보철구 지급	80	83	85	87	89	424
합 계	6,387	6,567	6,744	6,912	7,085	33,695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기타 지원

법안은 제19조 내지 제36조에서 취업지원, 제56조에서 양로지원, 제57조에서 양육지원, 제59조에서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60조에서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들은 보훈기금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혹은 고궁 등의 이용지원과 같이 그 소요금액이 미미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계결과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을 실시할 경우 2014년 64억 6,8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41억 2,0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추정치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교육지원	81	83	85	87	89	425
의료지원	6,387	6,567	6,744	6,912	7,085	33,695
계	6,468	6,650	6,829	6,999	7,174	34,120

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합계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문병호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서

2013.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의 섭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문병호의원 등 96인
2. 제안일 : 2012년 9월 27일
3. 회부일 : 2012년 9월 28일

II.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 등에 항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헌법가치 실현 및 민주헌정 질서 확립 등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국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법 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및 제63조).
-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1조).

IV. 검토의견

1. 입법의 필요성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대하여 발생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임.

이러한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민주화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를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으로 한다)이 제정되어 사망자·부상자·기타 희생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한 바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보상과는 별도로 예우법을 제정하여 민주유공자라는 별도의 유공자범주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제정안은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신청하면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여 제정안에 따른 지원²⁹⁾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에 따른 민주유공자의 범위는 타 민주화관련 유공자에 비해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활동에 관련된 자들을 포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희생을 당한 경우부터 해직 또는 학사징계와 같은 사례까지도 인정범위에 포함됨.

< 민주화관련 유공자 인정범위 >

제정안	5·18민주유공자	4·19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4·19혁명 사망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1-14)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해등급(1-14)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	4·19혁명 부상자 <상이등급(1-7)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
민주화운동 희생자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퇴학,정학)를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심의결정된 사람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³⁰⁾ 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4·19혁명에 참가한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현재 4·19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민주화 과정에서 현저하게 기여한 특성사건 관련자로 한정하고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 이에 반해 민주화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³¹⁾(전교조활동, 산업노조 투쟁, 학생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사건에 따라서는 민주화 기여 정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해직자, 학사징계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자 등 모든 대상자를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상이군경 등급 미달자 등 보훈요구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바,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타 법률의 적용의 적용을 받는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에 의한 연구·검토 등 각종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민주화유공자로의 적용대상과 인정기준, 지원수준 등을 마련하여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봄.

29)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한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수송시설 이용 등 국가유공자가 예우 받고 있는 모든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

30) 제22조(기타 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31) 【참고자료 3】민주화운동 인정사례

2. 관련 조문 검토

가. 민주유공자의 지정(안 제7조)

제정안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³²⁾.

민주화보상법 제4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해당여부, 장해등급 판정·보상금 결정,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항 결정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함.

<관련 위원회의 기능 비교>

보훈심사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국가보훈 대상자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요건의 인정 여부	1.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2. 상이정도의 판정	2. 관련상이지의 장해등급 판정
3.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권리소멸의 확인	4.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부양양육한 사람의 확인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재심의	6. 관련자추모단체에 대한 지원
7. 행위규범과 운영	7. 기타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보훈심사위원의 제척·기피	
9. 이의신청	
10. 보훈급여금 등의 결산처분	
11.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12. 보상정지기간 및 보상의 정도	
13. 법 적용대상 제외 및 결정여부	
14. 등록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3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민주화운동의 목적과 민주화운동 과정의 관련자 피해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화와의 관련성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심의하게 됨.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 등의 사용으로 보훈대상자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들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특정 민주화운동의 목적을 우선시하여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관점과 달리 특정 민주화운동의 목적과 결과(공헌)를 함께 고려하여 보훈대상자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보훈의 영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등 민주유공자 인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보훈지원 내용의 적정성(제2장부터 제6장)

동 제정안은 민주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은 타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비슷한 수준이어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국민정서와 시대환경 변화에 맞게 새롭게 개편되었는바(2012년 7월 1일 시행),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희생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외 일상적인 행정업무, 출·퇴근 등 희생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음.

보상체계도 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무공·보훈수훈자 및 상이등급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을 하지 않으며, 교육지원도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지원대상의 연령도 30세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상이 7급은 상이처 외 진료시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감면대상도 배우자와 선순위 유족만 지원(자녀 등 가족은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반면 제정안은 보훈·보상체계 개편 전 국가유공자가 예우 받는 내용 모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보다 민주화 관련자를 더 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³³⁾

33) 【참고자료 4】지원내용 비교표

따라서 민주유공자에우법 제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명예회복과 보상이 완전 종결된 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유, 관련 사건의 성격과 민주화에 기여한 정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국가보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다음, 이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보훈요구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다. 적용배제 법률에 국가보안법 포함 여부(안 제67조)

제정안 제67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에우법"이라 한다)상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 제정안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국가유공자에우법³⁴⁾, 5·18민주유공자에우법³⁵⁾에서는 적용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동 제정안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 그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적용배제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는 그 자체가 민주화 운동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던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임. 민주화운동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라 할지라도 일률적으로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제정의 의미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3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7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고 재심결과 무죄로 인정되면, 제정안에 따른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고려사항

동 제정안은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활동(전교조, 산업노조, 학생운동 등)과 그로 인한 희생도 다양(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등)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기준마련이 어렵고, 보훈요구를 촉발하여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정부부처내부에서도 쟁점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고,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에서도 이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담당자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김현중
연락처	02-788-2265 / FAX 02-788-4873

참고자료 1 민주화운동관련 대상자 심의현황('12.12.31. 현재)

○ 심의현황 (13,221건, 접수건수 대비 99%)

심사결과	청구내역	계	보 상			명 예 회 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신청건수		13,363	1,763	350	1,413	11,600	7,679	3,315	606
심의건수(99%)		13,221	1,708	328	1,380	11,513	7,649	3,268	596
* 인용(74%)		9,800	814	126	688	8,986	6,299	2,367	320
기각(26%)		3,421	894	202	692	2,527	1,350	901	276
취 하		75	27	13	14	48	27	13	8
잔여건수(1%)		67	28	9	19	39	3	34	2

※ 심의사건(13,221) 중 인용(9,800)된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로 인정

참고자료 2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현황('12.12.31. 현재)

□ 지급구분

○ 보상금

- 사망자 :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상이자 :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치료비, 기지급치료비 등) 지급

○ 생활지원금

- 구금자(30일이상), 해직자(재직기간1년이상), 장애판정 등외자
- 산정기준에 따라 5천만 원 이내에 생활지원금 지급

□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현황

(명/백만원)

구분	계		2002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4,938	113,289	309	16,195	1,746	29,707	611	10,033	599	12,535	101	5,369	44	1,579	46	2,142	33	701	28	1,201
민간단체	799	42,372	309	16,195	158	8,800	75	3,199	71	3,466	69	5,216	33	1,535	36	2,094	25	676	23	1,191
민간기업	(183) 4,139	(840) 70,917	-	-	(57) 1,588	(273) 20,907	(28) 536	(134) 6,834	(32) 528	(153) 9,069	(32) 969	(153) 20,256	(11) 236	(44) 7,529	(10) 138	(48) 3,279	(8) 87	(25) 1,697	(5) 57	(10) 1346

* 생활지원금 ()안은 부상자로 심의·의결자 중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자임

참고자료 3 민주화운동 인정사례

구분	사건별
1. 정치·반독재 운동 (4,96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인혁당사건(64년) : 1건 ◦한일회담반대운동(64~67년) : 80여건 ◦삼선개헌반대운동(69년) : 40여건 ◦부마항쟁(79년) : 40여건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85년) : 10여건 ◦구로구청 점거농성사건(87년) : 50여건 ◦3당합당 반대시위(90년) : 120여건 ◦5.18특별법 제정촉구시위(93년) : 30여건 ◦긴급조치 위반사건(74~79년 : 1천여건) 등 기타 : 4,590여건
2. 사상·이념단체 결성 및 활동(73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64~67년) : 10여건 ◦민청학련사건(74년) : 90여건 ◦인혁당재건위사건(75년) : 35건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79년) : 10여건

구분	사건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민전사건(79년) : 50여건 ◦양서협동조합 독서토론회사건(81년) : 10여건 ◦민중교육지 사건(84년) : 10여건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85년) : 10여건 ◦애학투사건(건국대 점거농성 86년) : 160여건 ◦재현의회(CA)그룹사건(86년) 등 기타 : 340여건
3. 언론민주화운동 관련 (37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자유언론실천운동(74년) : 110여건 ◦조선자유언론실천운동(75년) : 30여건 ◦신군부 언론인강제해직사건(80년) 등 기타 : 230여건
4. 전교조 등 교육 민주화 활동 (1,76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교조결성 해직사건(89년 이후) 등 : 1,690여건 ◦중고사립학교 학원민주화사건(89년 이후) : 50여건 ◦조선대·세종대 등 학원민주화사건(89년 이후) : 20여건
5. 노동운동 관련 (1,40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태일분신사건(70년) : 1건 ◦청계피복노조사수투쟁사건(77~88년) : 20여건 ◦동일방직 노조탄압사건(76, 80년) : 80여건 ◦반도상사 노조탄압사건(78~80년) : 20여건 ◦원풍모방 노조민주화사건(80~82년) : 160여건 ◦대우어패럴/구로연대투쟁사건(85년) : 100여건 ◦풍산금속 노동쟁의 사건(89~90년) : 45여건 ◦대우자동차 노동쟁의 사건(85, 87, 91년) : 10여건 ◦한국타이어 노동쟁의 사건(95년) : 5건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98년) : 14건 ◦현대중공업노동쟁의사건(87, 89, 90년 등) 등 기타 : 940여건
6.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126건)	◦박종철(87년), 이한열(87년), 강경대(91년), 이범영(94년) 등 : 126건
7. 기타(450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동의대사건(89년)-52건 ◦통일운동관련사건(88~89년) : 60여건 ◦노점상투쟁 등 생존권운동 : 10여건 ◦농민운동 관련(87년 이후) 등 : 290여건
합계	9,800여건

참고자료 4 **지원내용 비교**

○ **민주유공자/보훈체계 개편('12.7.1.) 전후 국가유공자간의 지원내용 비교**

구분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개편 전)	국가유공자(개편 후)
교육	<대상> : 본인, 배우자(사망행렬유족), 자녀	<대상> :본인, 배우자(전몰순직유족), 자녀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 4·19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본인 및 그의 자녀는 소득수준 고려 지원	【지원기준 조정】 *본인, 배우자 : 개편전과 동일 *자녀 : 조정 → 상이7급 자녀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모든 자녀 지원 연령 30세로 제한
취업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특별고용 : 인원 시행령에 정함 *지정취업 : 실시 *가정취업 - 본인, 사망 유족 : 10% - 부상자 등의 유가족 : 5% *호봉합산 : 근복무경력, 민주화운동 피해기간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특별고용 : 자녀는 3명 *지정취업 : 실시 *가정취업 - 본인, 유족(전몰순직) : 10% - 상이자 등의 유가족 : 5% *호봉합산 : 근복무경력	【지원 대상범위 조정】 *상이7급 자녀와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 4·19공로자, 국사발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특별고용 : 자녀는 1명만 지원, 1인 3회로 제한 *지정취업제도 : 폐지 *가정취업, 호봉합산 : 동일
의료	<국비진료> *상이정도 이상 : 모든 질환 *미만 : 상이처 외 질병 일부 본인부담 <감면진료> : 유가족 모두	<국비진료> *7급 이상 상이자 : 모든 질환 *등외자 : 상이처만 국비진료 <감면진료> : 유가족 모두	【국비진료 범위 조정】 *6급 이상 상이자 : 모든 질환 - 7급은 상이처 외 진료시 20% 본인 부담 【감면진료 대상 조정】 *배우자, 선순위 유족 1명만 지원
대부	<대상> : 본인, 선순위 유족 *기타희생자 : 생활수준 고려	<대상> : 본인, 선순위 유족	【개편전과 동일】
양로	<대상> :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제외)	"
양육	<대상> : 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제대	<대상>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제대	"
수송 시설	<대상> : 부상자	<대상> : 상이자	"
고공 등 이용	<대상> : 민주유공자, 선순위 유족	<대상> :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
주택 우선 공급	<대상> : 민주유공자, 선순위 유족	<대상> :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

○ **민주유공자/4·19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간의 지원내용 비교**

지원 내용	민주유공자예우법			4·19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사망, 행불자 (유족)	부상자	희생자	사망자 (유족)	부상자	공로자	사망, 행불자 (유족)	부상자	희생자
보훈 급여	×	×	×	○	○	지금 예정	×	×	×
교육	○	○	○	○	○ (7급자녀, 생활수준)	△ (생활수준)	○	○	△ (생활수준)
취업	○	○	○	○	○ (7급자녀제외)	△ (자녀제외)	○	○	○
의료	△ (감면)	○ (등급이하상이처외 본인 부담)	△ (감면)	△ (감면) -선순위1명	○ (7급:상이처외 본인부담)	△ (감면) -선순위1명	△ (감면)	○	△ (감면)
대부	○	○	△ (생활수준)	○	○	○	○	○	△ (생활수준)
양로	○	○	○	○	○	○	○	○	○
양육	○	○	○	○	○	○	○	○	○
수송 시설	×	○	×	×	○	×	×	○	×
고공 등 이용	○	○	○	○	○	○	○	○	○
주택 우선 공급	○	○	○	○	○	○	○	○	○
기념, 추모 사업	○	○	○	○	○	○	○	○	○
시설물 설치특례	○	○	○	○	○	○	○	○	○

* 5·18민주유공자도 보훈체계 개편내용에 맞게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수준을 조정할 예정

목 차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4937,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1) 검토 보고서

2013. 6.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의 섭

I. 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3
1. 제정이유 및 필요성	3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4
가. 조문 형식	4
나. 주요 내용 검토	4
(1) 적용 대상자 범위 관련(안 제4조제1항제3호)	4
(2) 신상변동의 신고 관련(안 제8조)	6
(3) 교육지원 대상자 범위 및 연령 제한(안 제12조)	7
(4) 취업지원 대상자 범위(안 제23조)	8
(5)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관련(안 제71조제1항가목)	9
[참고자료]	12

I.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김정훈의원 등 18인
- 나. 제안일 : 2013. 5. 13
- 다. 회부일 : 2013. 5. 14

2.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과 동시에 5·18광주민중화운동과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이었음.

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를 부마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 함으로써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법 적용대상자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함(안 제4조).
- 나. 부마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다.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교육·요양지원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부터 발생하고, 사망하거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 라.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 마. 부마민주항쟁의 정신·계승 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7조).

- 바. 부마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5조).

II. 검토의견

1. 제정이유 및 필요성

부마민주항쟁³⁶⁾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마산 등 경남 일대의 학생·시민들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으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 6월 4일 제정되어 올해 12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 동 법률 제정 시 안전행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하였음.

제정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관련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에게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예와 같이 별도의 법률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6) 【참고자료 1】부마민주항쟁 개요 및 관련자 심의현황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조문 형식

제정안의 내용은 총칙,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기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조문 구조로 되어 있으나, 보훈체계 개편³⁷⁾에 따른 내용을 일부 반영³⁸⁾하고 있음.

나. 주요 내용 검토

(1) 적용 대상자 범위 관련(안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등록이 된 사람으로서 예우를 받을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음.

적용 대상 범위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³⁹⁾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나 전상·공상군경 등 기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의 수형생활자, 포장이나 훈장 서훈자, 상이등급 7급 이상의 장애 등을 가진 자 등 일정한 요건 이상인 경우에만 예우함을 감안하여 부마민주유공자도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주장임.

제정안	수정의견
제4조(적용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마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2. (생략) 3.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희생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4조(적용 대상자) ① ----- ----- ----- ----- ----- 1. 2. (제정안과 같음) 3.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희생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적용 대상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예우 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 신상변동의 신고 관련(안 제8조)

제7조(등록 및 결정)는 부마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8조(신상변동 등의 신고)는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등록신청과 신상변동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8조의 신상변동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주체가 누락되어 있고,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신상변동 신고를 중복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등록신청 대상자가 신상변동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추가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상변동 신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7) 【참고자료 2】보훈체계 개편(‘12.7.1.) 전후 국가유공자 간 비교

38) 【참고자료 3】5·18민주유공자와 부마민주유공자 간 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39) 제22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제정안	수정의견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부마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 9. (생략) ②·③ (생략)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부마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 1. ~ 3. (제정안과 같음) 4. ----- 가족에 추가로----- ----- 5. ~ 9. (제정안과 같음) ②·③ (제정안과 같음)

(3) 교육지원 대상자 범위 및 연령 제한(안 제12조)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부상자,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희생자
2. 부마민주항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부마민주항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희생자 및 그 자녀
2. 부마민주항쟁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안 제12조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교육지원 연령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연령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⁴⁰⁾에서 규정된 30세 이전

40)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생략)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취학 연령을 30세로 제한하는 것은 보훈체계 개편에 따라 대상별로 같은 지원내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 해당 법률에서 이를 통일 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나, 부마민주유공자의 경우 대상자들의 연령이 높고,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와 달리 취학 지원 연령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4) 취업지원 대상자 범위(안 제23조)

안 제23조는 부마민주유공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⁴¹⁾에서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이나 유족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신체적 희생이 없거나 부상이 경미한 부마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자녀와 부모가 제외되어 있음.

제23조(취업지원 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부상자 및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희생자
2. 부마민주항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부마민주항쟁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부마민주항쟁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대상자는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41)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①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에게는 그를 지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高齡)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서 부마민주유공자의 자녀와 부모가 제외된 이유는 보훈체계 개편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상이7급 자녀와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 4·19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와 부모가 제외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부마민주유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민주화운동인 5·18민주유공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자가 현재까지 39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취업지원 대상에 부마민주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5)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관련(안 제71조제1항가목)

제71조는 「국가보안법」, 「형법」등을 위반한 경우 민주유공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협약」의 이행입법으로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제정안	수정의견
제7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생략)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7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3. -----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

나. ~ 바. (생략) 4.:5. (생략) ② ~ ⑤ (생략)	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 바. (제정안과 같음) 4.:5. (제정안과 같음) ② ~ ⑤ (제정안과 같음)
--	---

문 의 처

김용성 입법조사관 (788-2396)

【참고자료 1】

부마민주항쟁 사건개요 및 관련자 심의현황 등

□ **사건개요 및 진행경과**

○ 부마민주항쟁은 1979. 10. 16.부터 10. 20.까지 약 5일간 부산, 마산지역 일대의 학생·시민들을 중심으로 유신철폐, 언론자유 등을 주장하며 전개된 일련의 대규모 시위사건을 말함. 뒤 이은 유신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된 시위로 평가됨.

□ **피해 내용**

○ 부산, 마산의 봉기로 신원미상의 사망자 3명, 연행된 사람은 총 1,563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중 단순가담자 67명이 소취하, 20명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일반검찰에 송치된 31명은 전원 소취하, 651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792명은 훈방조치

□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관련자 심의현황**

(‘12. 12월말 현재)

구 분	계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	기타
신청	57	16	2	14	41	26	3	12	-
인정	39(68%)	10	-	10	29	15	3	11	-
불인정	18(32%)	6	2	4	12	11	-	1	-

*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 총 412백만원(보상금 162, 생활지원금 250) 지급

□ **부마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소요예산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의료지원	9	20	20	21	70
교육지원	2	4	5	5	16
대부지원	9	19	19	19	66
기념행사	180	379	397	416	1,372
단체지원	75	156	164	173	568
합 계	275	578	605	634	2,092

* 소요예산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관련자로 인정된 인원(39명)을 기준으로 계상

【참고자료 2】

보훈체계 개편(‘12.7.1.) 전후 국가유공자 간 비교

구 분	국가유공자(개편 전)	국가유공자(개편 후)
교육지원	<대상> : 본인, 배우자(전몰순직유족), 자녀 *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 4-19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본인 및 그의 자녀는 생활수준 고려 지원	【지원기준 조정】 ▪본인, 배우자 : 개편전과 동일 ▪자녀 : 조정 → 상이7급 자녀도 생활수준 을 고려하여 지원 → 자녀 지원연령 30세로 제한
취업지원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특별고용 : 자녀는 3명 ▪지정취업 : 실시 ▪가정취업 - 본인, 유족(전몰순직) : 10% - 상이자 등의 유가족 : 5% ▪호봉합산 : 군복무경력	【지원대상 조정】 ▪상이7급 자녀와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 4-19공로자, 국사발 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특별고용 : 자녀는 1명만 지원(지원횟수 3회로 제한) ▪지정취업제도 : 폐지 ▪가정취업, 호봉합산 : 동일
의료지원	<국비진료> ▪7급 이상 상이자 : 모든 질환 * 등외자 : 상이처만 국비진료 <감면진료> ▪대상 : 유가족 모두	【국비진료 범위 조정】 ▪6급 이상 상이자 : 모든 질환 ▪7급 : 상이처 외 진료 시 20% 본인 부담 【감면진료 대상 조정】 ▪배우자, 선순위 유족 1명만 지원
대부지원	<대상> : 본인, 선순위 유족	【개편전과 동일】
양로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자녀 제외)	"
양육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제대	"
수송시설	<대상> : 상이자	"
고공 등 이용	<대상> :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
주택우선 공급	<대상> :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

【참고자료 3】

5.18민주유공자와 부마민주유공자 간 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지원 내용	5·18민주유공자			부마민주유공자		
	사망, 행불자 (유족)	부상자 (1-14급)	기타 희생자	사망, 행불자 (유족)	부상자 (등외자 포함)	기타 희생자
보훈 보상금	×	×	×	×	×	×
교육	현행	○	○	△ (생활수준)	○	△ (생활수준)
	개정	동일	일정등급 이하자 생활수준	동일	(일정등급 이하자 생활수준)	
취업	현행	○	○	○	○	○ (자녀제외)
	개정	동일	일정등급 이하자 자녀 제외	자녀 제외	(일정등급 이하자 자녀제외)	
의료	현행	○ (감면)	○	○ (감면)	○ (선순위 1명만)	○ 배우자 (선순위) 1명만
	개정	선순위 1명만	일부분인 부담	배우자 (선순위) 1명만		(일부분인 부담 42)
대부	현행	○	○	△ (생활수준)	○	○
	개정	동일	동일	생활수준 미적용	○	○
양로	○	○	○	○	○	○
양육	○	○	○	○	○	○
수송	×	○	×	×	○	×
고궁등 이용	○	○	○	○	○	○
주택	○	○	○	○	○	○
공급	○	○	○	○	○	○
기념	○	○	○	○	○	○
사업	○	○	○	○	○	○
시설물 설치	○	○	○	○	○	○

* 5·18민주유공자는 보훈체계개편 내용에 맞춰 지원내용(교육취업의료 등)을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하여 표시

**유공자 본인(사망자는 선순위자 기준)을 기준으로 전원지원 시 ○, 제한기준 적용 일부지원 시 △, 지원 비대상은 ×

42) 일정 장애등급미만자는 상이처 외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

[기자회견문]

19대 국회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즉각 제정하라!

오늘 우리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문병호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구갑)을 대표로 96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 발의된 민주유공자예우법은 16, 17, 18대 국회에 이어 네 번째 발의되는 것이다.

2000년 발의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가결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주4·3평화공원이 들어섰고, 3·15국립민주묘지와 5·18국립민주묘지가 조성됐고, 모든 참전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됐고, 특수임무수행자도 유공자가 되었다.

하지만, 목숨과 인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획기적인 발전에 공헌한 포괄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아직 유공자 예우를 못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부상자가 되었으며, 강제해고를 당했고,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부당한 유죄판결을 받았다. 본인은 물론 유족과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때문에 민주화가 이뤄진 지금,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공헌에 대해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책무이고, 그럴 때만이 역사는 발전한다.

9월24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사여구로 치하만 하거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만 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합당한 조치가 동반될 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유신독재, 군부독재를 비롯한 온갖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였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라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야는 이번엔 발의된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렸다. 진정한 치유와 통합은 고통과 공헌에 대한 온당한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오늘 문병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9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하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2012년 9월 27일

[성명서]

민주유공 축소·왜곡 강력히 반대한다.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16대 국회 때부터 17대, 18대, 19대 국회에 줄곧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이하, 민주유공자법)의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16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한정하여, 전체 민주화운동을 조각내어 차별하며 변경 입법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9월 27일 96명 의원의 발의(대표발의 민주당 문병호 의원)로 민주유공자법이 4대째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이하, 민주화법)에서 기포함하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사건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바로 5월 13일 국회에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등 18명)한 데 이어, 6월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전격 회부되고, 6월 20일 안건상정되어 부마민주유공만을 단독처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000년, 대한민국의 전체 민주화운동에 대한 민주유공의 입법이 한 차례 편린화된 데 이어 또다시 민주화운동을 갈라내고 조각내고자 하는 시도가 새누리당의 주도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 진전시킨 결과이다. 그러하기에 민주유공은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 예우가 3·15의거와 4·19혁명을 포함한 4월 혁명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한정되어 온 심각한 차별의 문제를 국회가 해결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마당에 새누리당의 주도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만을 별도의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에 우리 전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부마민주항쟁유공자법 추진은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편린화하여 축소·왜곡시키고, 역사적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지역민원에 한정하며, 민주화운동 세력간에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책동인 것이다.

국가보훈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민주유공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입법을 하여야 하는 기구인 국회의 책임 방기도 분노스럽다. 그런데 심지어 이를 가증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민주주의 정신조차 무시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무시하는 국회의 처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십 수 년 동안 입법을 추진하며 기다려온 전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우롱하는 국회의 처사에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새누리당에 의한 민주화운동 축소·왜곡·분열책동으로 추진되는 부마민주유공자법을 강력히 반대한다.
1. 부마민주화운동관련자와 동일하게 국무총리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며, 부마민주유공자법과 동일한 기준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홀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민주유공 확립의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

2013년 6월 19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회 입법활동 경과

○ 16대 국회

- 2000년 12월 4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발의(대표발의 이훈평 의원)
- 2002년 1월 26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수정 가결됨

○ 17대 국회

- 2004년 9월 22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대표발의 이호웅 의원 외 102명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전병헌 의원 :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위원회 의견을 거쳐 마무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이 교체된 후, 참전유공자법과 연동됨.
정무위 전체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입법필요성이 검토되고, 13차례 안건 상정과 논의를 거쳤으며, 국가보훈처와 계승연대 간 실무논의 등을 통해 유공 대상의 범위를 사망(117명), 부상(670명), 30일 이상 구금자, 해직 후 1년 이상 미 복직자로 보훈처의 의견 또한 제시되었으나, 정권 말기 보훈처의 입장 변화와 총선정국으로 접어들고, 참전유공자법의 연동으로 동시 해결이 추진되었으나 참전자 문제는 해결되고 민주유공자법안은 17대국회 회기 말 정부조직개편 등 다른 사안에 밀려 자동 폐기됨.

○ 18대 국회

- 2008년 6월 10일 민주유공자법 제정 공청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최)
- 2008년 8월 4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발의(대표발의 유선호 의원 외 68명)
- 2008년 11월 28일 법안소위 회부
- 2011년 4월 19일 법안소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5차례 안건 상정되었으나, 2009년 11월 이성남 의원의 민주유공자법 보류하지 말고 논의를 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2011년 4월 19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네 번에 걸친 상정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심사한 것은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전 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의견청취, 시간적 제약으로 소위위원장의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함.
- 2011년 6월 24일 법안소위
민주당 박선숙 위원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계속 의사일정에만 오르고 심사가

되지를 못해서, 물론 이 법은 16·17대에 계속 검토됐던 법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다음번 보훈처 관련 심사는 이 법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이성현 소위원장이 수락함.

• 2011년 8월 25일 법안소위

안건 상정이 이루어지고 법안 심의에 착수하였으나 전문위원실의 준비 소홀로 진척이 되지 못하였고, 다만 법안소위원장 대리 이진복 의원 : 다음 회의 때는 이것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 해줄 것을 전문위원실에 주문하며 차기회의로 이월됨.

• 2011년 11월 22일 법안소위

• 2011년 12월 21일 법안소위

• 2011년 12월 22일 법안소위

• 2012년 2월 8일 법안소위, 2012년 2월 9일 안건상정

• 2012년 3월 정당 및 19대 총선 후보 민주유공자법 제정 공개질의

• 2012년 5월 18대 국회 회기말로 민주유공자법 폐기

○ 19대 국회

• 2012년 9월 27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발의(대표발의 문병호 의원 외 95명)

• 2013년 4월 10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정무위 안건 상정, 법안소위 회부

• 2013년 6월 20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안소위 안건 상정

• 2013년 6월 21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안소위 안건 상정